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 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한성공회정의실천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의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522-7284)

일시 : 95년 11월 1일 오후2시-오후8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막걸리 국가보안법'을 아십니까?

국가보안법 연구

1 · 2 · 3

박원순

인권변호사로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저자가 손과 발과
뜨거운 가슴으로 쓴
국가보안법의 역사 !!

1 국가보안법 변천사

320쪽 / 5,300원

2 국가보안법 적용사

606쪽 / 9,800원

3 국가보안법 폐지론

260쪽 / 5,300원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120-1 전화 279-0157

역사비평사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토론회 순서

사회 : 이미경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기조발제 (14:00-14:50)

자유·민주·진보·통일의 족쇄

국가보안법

- 리영희 (한양대 교수)

주제발표 (15:00-18:30)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와

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

1부 국가보안법과 문화 - 억압과 이탈/1

- 김 훈 (시사저널 편집국장)

가부장적 군사문화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9

- 변희순 (사회학 박사,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국가보안법과 적색공포/35

- 오수성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41

-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2부 국가보안법과 사회복지

- 김연명 (상지대 사회복지과 교수)

한국정치문화의 발달과 국가보안법/69

- 손희재 (정치학 박사, 21세기 프론티어 인권연구회 공동연구 발표)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81

- 허명구 (『사람과 일터』주간)

북한 보도와 국가보안법/89

- 정일용 (연합통신 기자)

국가보안법과 남북 인적교류상의 법적 장애/101

- 이장희 (외대 법학과 교수)

종합토론 (18:50-20:00)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억압과 이탈 -국가보안법과 문화

김 훈
(시사저널 편집국장)

지난 9월24일 부터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고봉산 기슭에서 발굴된 수백구의 인골유해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현장의 산야에 널려있다. 금정굴은 석탄 채취가 끝난 후 폐기처분된 폐광이다. 6·25 전쟁때 인민군이 패퇴한 후 진주한 경찰병력과 우익단체들에 의해서 약 1천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이 적과 내통했거나 협조했거나 혹은 적과 내통한 자의 신원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등으로 집단학살되었다. 금정굴은 수직굴이다. 당시의 학살 상황을 정확히 재현할 수는 없으나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은 10-20명씩 수직굴 앞에 끌려가 총살되었으며,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을, 아직 총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직굴 안으로 던져넣고, 떡시루 처럼 그 위에 흙을 한켜 뿌리고 흙을 뿌린 사람들이 다시 총살 당해서 죽음의 차례를 기다리는 다음 사람들에 의해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수직굴은 주민들의 시체로 가득 메워져서, 굴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그 위에 잡초가 자라나서 아무도 죽음의 현장을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4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한국은 연간 무역고 1천억불, 국민소득 1만달러의 달성을 목전에 두고있다.

유족들의 비통한 염원에 따라 이 금정굴의 발굴 작업이 시작된 이후 이미 3백여구의 두개골이 발굴되었고, 그 밖의 뼈 토막들은 해부학적으로 재조립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출토되었다. 신발 속에 들어있는 어린이의 발목 뼈와 늙은 할머니의 쪽진 머리채도 발굴되었다. 사람들을 죽일때 철사줄로 줄줄이 손목을 묶고 끌고갔던 것인지, 손목을 묶은 철사의 고리들도 무수히 발굴되었다. 유골들은 금정굴 주변의 인근산야에 킬링필드를 이루며 널려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보안법을 걱정하는 시간에도 그 유골들은 금정굴 주변에 가득 널려서 비와 이슬을 맞고 있다. 그리고 그 뿐이었다.

우리 사회는 이 사태를 수습하거나 이 사태를 사람들의 사유체제 안에서 자리잡게 할 능력이 없었다. 그 무능력은 정치적인 것이며 또 사회적인 무능력일 뿐 아니라 인식과 감성과 현실이해에 있어서의 무능력이었다. 관할 지방관

청은 처음부터 이 사태를 외면해왔으며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에 이 사태의 수습을 지시했다. 그 지시 사항 속에는 수습의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어있지 않았고, 하급관청은 상급관청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라는 것인지 알수 없었고, 상급관청 역시 자신의 지시사항의 내용을 스스로 알지 못했다.

유족들은 두개골 뼈 몇점을 싸서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서 농성 시위를 벌였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간에 국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유족들은 하는 수 없이 유골을 다시 금정굴 앞으로 가져가서 벌려놓았다. 유골들은 지금도 그렇게 널려있다. 비가 오면 유족들은 비닐로 유골을 덮어 주면서 대책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 유족들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사자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의전적인 배려였다. 정부는 거절했다. 거절의 이유는 '우익단체들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속수무책인 상태에 빠져 버렸다. 아무도 더이상 이 사태를 이야기하거나 이 사태에 대한 생각들을 심화시키거나 생각을 공유하려하지 않았다. 우리사회는 무고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에게 대해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접어두고서라도, 심지어 산자가 죽은 자에 대해 베풀어야 하는 최소한의 의전적인 예우 조차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그들은 빨갱이였거나, 빨갱이로 보였거나, 빨갱이와 가까운 자들이었거나, 빨갱이를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거나, 빨갱이를 고무찬양한 자들이었거나, 빨갱이를 숨겨준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국가보안법 세미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나서 그 학살과 발굴의 현장에 두차례 가보았다. 나는 그 현장에서 오늘 내가 이야기해야할 생각과 내용에 관한 어떤 실존적 체험이 발생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는 아마 그같은 기대에서 실패했던 것 같다.

현장에는 몇명의 특수한 관심을 갖는 신문기자들과 관할 군청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과 정보과형사인 듯한 사내들과, 그리고 이제는 늙어버린 유가족들 몇명이 서성거릴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끔찍하다'고 말했다. 나역시 그렇게 말했다. '끔찍하다'는 말 이외에 어떤 생각을 계통을 세워서 정리해나갈 수 없었다. 나는 진실로 끔찍했으며, 그리고 것처럼 끔찍한 사태에 대해 다만 '끔찍하다'는 생각 밖에 할 수 없는 이 시대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나자신의 역사적 운명이야말로 학살의 현장 보다도 더 끔찍했다. 나는 그야말로 무력하게도 그 뼈의 더미 앞에 소주 한잔을 올리고 절 두번을 하고 나서 물러났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도대체 우리사회가 이 사태를 어떻게 위로하고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며 무엇을 쓰다듬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내 생각은 그러나 별 진전은 없었다. 모든 생각들은 그 유골들의 끔찍함 앞에서 좌절되고 말았던 것인데, 그들이 빨갱이였거나 혹은 빨갱이로 보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죽음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우리사회 이웃들의 마음가짐이나 또 그들의 사체에 대해 문명한 사회로써 어떤 최소한의 의전을 표시하는 일 조차 '우익단체의 반발' 우려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들의 유골은 결국 야산에 방치될 수 밖에 없다는 이 시대태의 이 무력함은 더욱 끔찍했다. 그 유골들은 마치 국민소득 1만불과 무역고 1천만달러의 시대에 그야말로 귀찮고도 돌켜보고 싶지 조차 않은 역사의 상처처럼 불쑥이 세상의 표면으로 돌출되어, 천덕꾸러기으로써 외면당하다가 결국은 금정굴의 구덩이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지금 유골이 방치되어있는 사태와 이 사태에 대한 사회적 침묵과 무관심 그리고 정치권과 행정기관들의 속수무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억압되고 감시받아온 인간정신의 불구의 역사를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매우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학살과 오늘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 밑에 깔린 인간정신의 불구성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정신의 자랑인 문화 전체의 불구성과 무기력에 관하여 우리 사회는 아직 충분한 자기성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이야기는 이 사태에 대한 나 자신의 성찰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성찰을 유발해 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같은 반성의 진정성 위에서 우리사회가 억압과 감시속에서 훼손당한 정신과 마음과 문화와 가치의 온전성을 회복하고 싶은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사회의 가장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억압과 감시의 현실적 틀로써 작용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우리사회에서 인간의 정신과 문화에 대한 억압과 감시와 감금의 틀로써 적용된 수많은 사례들은 박원순변호사의 저서 국가보안법 연구 제2권 안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국가보안법이 정신과 문화의 부문에 대해 적용된 사례는 언론, 출판, 문학, 미술, 사상, 학문, 교육등에 이르기 까지 실로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고 있고, 그 적용건수는 실로 방대하다. 또 국가보안법은 문민정부에 와서도 김일성 사망후 조문파동과 함께 거의 경연적이고도 발작적으로 조성된 이른바 공안정국의 시절에 경남 진주 경상대학 교과서 파동등으로 계속 맹위를 떨쳐왔다.

이 자리에서 문화 예술 사상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를 일일이 분석해서 제시한다는 것은 내 이야기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박 변호사의 저서를 정독하는 것으로 이미 족하다. 나는 오히려 제1공화국 이후 반세기에 걸친 국가보안법 적용의 역사와 그 누적된 결과가 오늘의 사람들의 문화와 정신을 어떠한 모양으로 왜곡시켜 놓았던 가에 관한 나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 한다. 그리고 것처럼 왜곡된 불구의 정신적 풍경은 내가 앞서 보고드렸던 저 고양시 금정굴 앞 야산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비극적으로 펼쳐져있다.

인간의 정신은 현실을 긍정하거나 혹은 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긍정이나 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이 현실 속에서의 삶을 끝끝내 부정할 수는 없으리라는 점이다. 나는 인간정신의 그같은 성향을 운명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싶은 존재이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과 부정이란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긍정할 수 있기 위하여 부정하는 것이고, 진보주의는 보수할 만한 가치들을 현실 속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일 터이다. 박원순 변호사가 수집분석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를 읽으면서 나는 국가보안법이 우선 인간의 정신작용과 그 결과물인 이른바 문화 속에서의 긍정과 부정의 역동성과 상호기능을 파괴함으로써 한 시대 전체의 정신의 모습과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불구로 만들어왔던 점을 검증할 수 있었다.

죽은 시인 김수영은 "모든 문화는 불온하고, 모든 살아있는 문화는 더욱 불온하다"라고 말했다. 문화가 불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화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꿈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수영의 설명이었다. 아마도 김수영이 말한 '불온'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의미의 불온은 아니었을 것이다. 김수영의 '불온'은 말하자면, 현실 속에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 존재해야하지만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동경하는 정신, 혹은 결핍을 스스로 보완하려는 인간정신의 역동성을 말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했다.

말하자면 그의 '불온'은, 문화란 미래에 있을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의 행위라는 가장 평범한 말로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의 문화의 불온성이란 그 불온의 내용이 현실의 제도나 지배적 가치나 표현양식을 부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불온은 현실에서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의 삶을 더욱 역동적으로 긍정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는 불온이다.

국가보안법의 반세기는 현실에 대한 인간정신의 긍정과 부정의 상호작용을

파괴했고 그 두 개의 국면을 적대적으로 분립시켜놓았다. 그러므로 긍정과 부정은 서로 보완하고 길항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발전된 현실을 지향하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이 타방을 전면적으로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적대관계의 양상으로 전개되어왔다. 국가보안법은 이 한반도의 남북 적대관계를 반영하는 제도적 산물로 태어났고, 그 50년 적용의 역사는 남북 적대관계를 남한내부의 적대관계로 재생산해 내는데 기여했다. 그 적대관계는 인간정신의 긍정과 부정의 교호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데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국가보안법의 토대가 되어있는 인간관이며 현실관이며 문화관인 것임은 박원순변호사가 저서에서 제시한 여러 적용사례에서 검증할 수 있었다.

문화, 예술, 학술 분야를 규제했던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들은 한결같이 문화 혹은 예술이라는 정신작용이 인간의 꿈과 열망과 동경을 표현하는 분야이며 그같은 열망의 표현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현실의 개선을 지향하고 있는 창조적 영역이라는 점, 다시 김수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며, 그것이 인간정신의 매우 값진 운명이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정신과 현실을 적대적 이분법으로 구획하고 있으며, 것처럼 구획된 인간관과 현실관을 인간의 정신작용에 적용해왔다. 그것은 소설가 남정현의 분지 필화사건(1965)에서 화가 홍성담의 걸개그림사건(1989)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이 일관되게 보여준 태도였다. 국가보안법은 화폭 속의 구도와 표상물 혹은 색깔들과 현실의 구도를 혼동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현실과 예술의 관계를 차단하는데 기여해왔던 것인데 그 차단은 바로 그같은 혼동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현실에 대해 역동적으로 작용하려는 정신과 문화의 힘을 현실의 이름으로 배척해 왔던 것이다.

그렇게해서 나타난 문화현상을, 나는 내 이야기의 제목으로 삼은 '억압과 이탈'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국가보안법이 그 법의 체계 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세계관은 관측소(OP)중심의 세계이다. 권력 만이 현실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그 법의 근본사상이다. 그 사상에 따라서 보안법은 이 세계의 가장 유리한 고지에 관측소를 설치했고, 그 관측소로부터 세계를 관찰하고 있다. 이 세계가 한개의 관측소와 여타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한개의 관측소의 시선으로 관찰당하고 재단당한다는 현실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문화 예술 분야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기소장 서두부분이 이처럼

장황한 복문의 논리구조로서 거대담론을 전개하게 되는 까닭은 그 관측소의 시각이 현실과 인간정신을 양극으로 나누는 분리주의, 혹은 단절주의에 입각해있음을 말해준다.

국가보안법의 체제는 방카의 구도와 흡사하다. 그것은 좁은 관측구를 통해 세계 전체를 관찰하려 한다. 그 관측구멍을 통해 관측된 세계는 그 관측구의 논리와 가치를 통해서 재단되는 것이다. 한점의 관측구와 관측대상이 되는 여타의 세계는 분리, 단절되고 만다. 방카는 강고하고도 완강하다. 그리고 방카는 인간이 정착된 문화를 건설하는 공간이 아니라 임시로 구축된 가건물이다. 방카의 모순은 그 강고성과 임시성이다. 방카는 임시로 구축된 가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강고하고도 완강한 구조를 갖게되는 것이다. 인간은 방카를 토대로 해서 역동적인 문화를 건설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문화는 그 방카를, 문화자신의 힘으로 철거해낼 수 없을 때, 방카의 관측권 밖으로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 이탈의 문화적 현상을 나는 현실에 대한 무관심, 무기력 그리고 퇴폐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의 아산에 펼쳐진 킬링필드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외면은 방카의 관측권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해나간 정신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탈해버린 정신은 스스로 방카가 장악하는 영역의 밖에 서식함으로써 방카가 관리하는 현실영역에 대해 기꺼이 무기력해 질 수 있다. 김일성 사후에 벌어진 공안정국에 대한 사회 여론의 대응도 이처럼 방카의 관측권 밖으로 스스로 이탈해나가는 정신과 문화의 무기력을 보여주었다.

경남 창원 지역의 지방법원이 경상대 교수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린 사건은,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서는 당시의 공안정국 전체를 반전시킬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었던 계기를 이 사회에 부여했었다. 그러나 사회의 여론과 관심은 그 반전의 계기를 대체로 외면해 버렸다. 그 영장기각 사건은 그저 단순한 사법적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뿐 이 사회의 정신은 그 영장기각의 의미와 효과를 증폭시키고 확산시킴으로써 공안정국의 현실에 대응하는 전략 방향으로까지 나아갈 수는 없었다.

방카가 관측소와 세계를 단절시키듯이, 방카 밖의 세계 역시 자신이 처한 세계와 방카의 관측권을 스스로 분리시킴으로써 단절의 현상을 심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계와 방카의 단절 관계는 강화되고, 그 단절의 관계 위에서 방카의 관찰, 감시 기능은 매우 편안하게 강화되어 갈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해서 형성되는 문화는 방카의 속성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문화의 바탕에는 가건물적인 허술함과, 생존전략으로서의 완강

한 무관심, 무기력이 자리잡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방카가 관리하는 현실로부터 이탈하려는 시대의 정신은 무관심과 퇴폐로 나타나고 있다. 퇴폐는 퇴폐로써의 발랄함과 생동감과 위안과 향락의 기능을 갖는다. 퇴폐에 대하여 정돈된 생각을 전개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퇴폐는 풍속의 반대어이기도 하지만, 퇴폐 자체는 하나의 완성된 풍속이기도 하다. 서울 강남지역에 교회당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사태는 이 시대의 퇴폐를 교화할 힘을 갖고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현자유와 관련된 사회여론의 논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중심으로 밀도있게 전개되어 왔다가 보다는 오히려 마광수 기소사건이나 이른바 음란물 단속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왔다. '즐거운 사라' 사건 역시 분명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회의 논의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신장에 기여했던 것이 아니라 퇴폐의 확산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마광수 사건에 관한 논란들은 방카의 관측권을 스스로 이탈해나간 무력한 자유의 영역에서, 매우 화려하고도 발랄한 논의를 펼쳤던 표현의 자유 논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문화는 70년대나 80년대의 지향성과는 달리, 공동체적 삶의 정당성을 모색하려는 방향보다는 개인의 꿈과 환상과 열망을 치열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퇴폐는 이제 그 어떤 종교적 교육적 지도력에 의해서도 극복해나가기 어려운 풍속으로 자리잡아 가고있다. 문화의 개인화와 풍속의 퇴폐화는 그 나름대로 추구하려는 자유의 영역이 있을 터이다. 그러나 방카의 관측권 밖으로 스스로 이탈해나간 자리에서 벌어지는 그같은 개인화와 퇴폐화는 현실과 역사의 핵심적 구조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눈멀게 할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50년 적용의 역사는 거기에 저항하려는 인간의 정신을 강화시켜나간 측면이 있지만,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문화현상을 더욱 광범위하고도 보편적 현상으로 조장해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청준의 소설 '전짓불 앞의 방백'은 이데올로기적 질문을 제기하는 자와 거기에 대답해야 하는 자유인 사이의 고뇌를 보여준다. 이데올로기는 인간에게 너는 누구의 편이냐, 너는 어느 쪽이냐를 강압적으로 묻고 있다. 묻는 자는 어둠 속에서 전짓불을 쏘아대고 있다. 묻는 자의 위치는 언제나 방카 속이다. 대답해야하는 자는 묻는 자가 쏘아대는 빛의 광권 안에 여지없이 노출되어 있다. 대답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쪽이라고 대답하면 저쪽에서 죽이고 저쪽이라고 대답하면 이쪽에서 죽일 터이다. 그러므로 묻는자의 광권안에 노

출된 자유인은 대답을 끝없이 유보하면서, 자기 내면을 향하여 길고 긴 방백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과 정치권력이 인간을 향하여 너는 누구의 편이냐, 너는 어느 쪽이냐 라고 묻기를 계속한다면 문화와 삶의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질문에 대답해야하는 운명이 계속된다면, 인간은 다만 방카를 건설하거나 현실로 부터의 이탈과 퇴폐의 삶을 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과 권력은 인간을 향해서 우선 '너는 누구의 편이냐' 라는 물음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법이 인간에게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목전의 현실적인 적과 대처해야한다는 상황논리로서도 수궁할수 없는 질문인 것이다. 그 질문이 법의 위력에 편승해 있을때, 거기에 대답해야 하는 인간의 정신은 스스로 시들고 말라죽고 말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여러 조항의 바탕에 깔린 인간관은 바로 그러한 질문, '너는 누구의 편이냐' 라는 질문제기방식에 바탕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의 편이기에 앞서 가장 근본적으로 자기자신의 편이며, 사회공동체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자기자신의 편인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에 응집력있는 지향성을 부여해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이 상정하고 있는 질문의 방식을 "너는 누구의 편이냐" 에서 "이같은 질문은 인간에게 타당한 것이냐"로 바뀌어야 한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어떤 법적 논리를 제시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그것이 문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모든 자유인의 열망이기 때문이다. 또 그같은 질문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인간의 정신은 현실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조합함으로써 역동적인 문화를 건설해나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저 경기도 고양시의 야산에 널려있는 유골에 대한 우리들의 괴로움, 우리들의 무력감, 무력속의 편안함, 편안함 속의 수치심, 수치심 속의 절망감, 절망감 속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 속의 무력감, 이런 비논리적이고도 복합적인 참담함을 반추하면서 나는 내 이야기를 끝내려한다.

가부장적 군사문화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1. 서론

1.1. 문제제기

여성문제를 '국가보안법' 과 연관해 볼때 얼핏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여성운동을 한다는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었다는 보도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 정치제도의 특성을 유교에 기반을 둔 가부장적 군사문화라고 지칭한다면 여성은 가장 큰 잠재적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부장적 군사문화가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 여성문제에 어떠한 유형으로 융해되어 사회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가를 밝힐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일제시대의 군사문화로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제말 일본군부의 한반도를 매개로 한 대륙침략과 더불어 미국에서 직수입된 군사문화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 성장, 그리고 전반적 사회생활에 밀바탕이 되는 가치규범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5.16 이후 우리사회에 군대식 사고방식이 부지불식간에 깊게 스며들었다.

군대식 사고방식에 바탕을 둔 근대화의 물결은 능률 효율성의 측면에 기반을 두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민주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경제개발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삼은 군이 정치권의 핵심부를 차지하게 되어 군사문화를 주입시켰다. 효율성, 관료제를 강조하는 군사문화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유교문화에 융해되어 여성의 활동범위를 사적영역으로 한정시켰을 뿐 아니라 공적영역에 참여를 저조하게 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특히 향락산업의 발달로 인해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가치는 여성을 성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대문화의 특징이라 함은 규범이 강조되는 문화, 집단적 성격의 문화, 계급성이 뚜렷한 문화, 조직목적의 절대성을 띤 문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이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가족에 영향을 미쳤긴 하지만 특히 여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에 의해 일정 연령에 달한 청년층은 누구나 군대 구성원으로서 충원되기 때문에 성장환경, 종교, 교육수준 및 기업 등에 의해 상당히 다양한 사고체계와 가치관 및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군사문화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가부장제란 '국가의 위계구조상 상층부가 압도적으로 남성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산업, 재정, 종교, 군대 및 사회적 조직체계'로(앤 쇼우스틱 사순, 1989) 정의해 볼때 국가의 가부장적 성격은 지배층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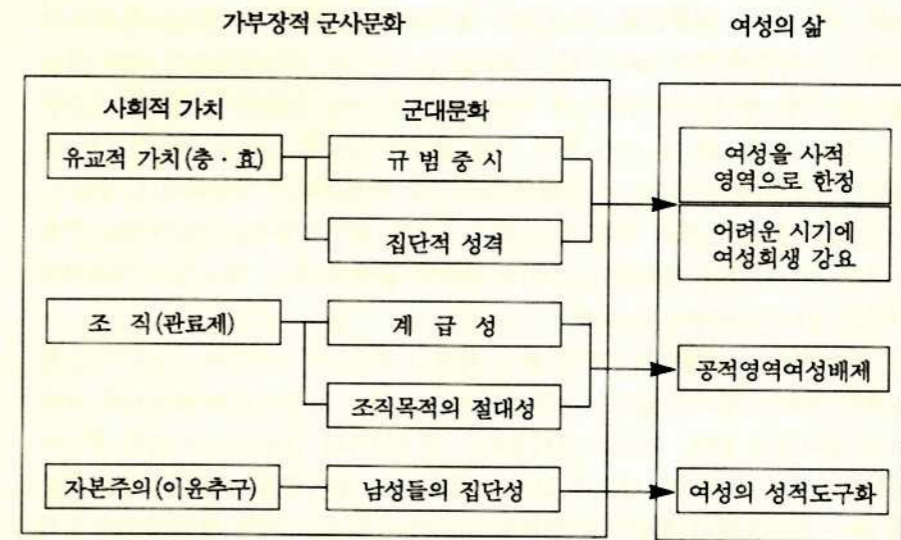
그러면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5·16 군사혁명 이후 군부가 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시기부터 군사 문화의 영향하에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유교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의 어떤 요인이 함께 결합하여 여성의 지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사회의 군사문화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역을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으로 나누어 보고, 그리고 성적 도구로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는 일제시대인 1910년 부터 1945년을 제1기로, 1963년 이후 부터 1979년의 제3공화국에서 유신체제 까지를 제2기로, 1980년 부터 1992년 사이의 제5공화국에서 제6공화국 까지를 제3기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2 연구분석틀

여기서 제기되는 연구의 기본 가정은 군대문화의 조직목적의 절대성, 계급성, 집단적 성격, 규범을 강조하는 군사문화의 특질이 유교적 가치와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관료제, 자본주의 이윤추구의 특성과 어울려 여성의 삶을 사적부문에 한정시키고 공적부문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을 성의 상품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즉 첫째, 전통적 규범에의 복종을 강조하는 문화, 집단적 성격의 문화는 유교적 가족주의와 맞물려 여성을 사적영역에 머물게 하거나, 어려운 시기에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직목적의 절대성, 계급성은 합리성

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관료제의 특성과 그 이해를 같이하여 여성의 공적 부문에의 참여를 저조하게 하였으며, 세째, 성에 대한 욕구가 집단적으로 표출되고,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하고 결합될 때 여성을 성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2. 가부장적 군사문화와 여성

본 장에서는 군대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며, 유교문화와 관료제의 특성과 어떻게 결합하여 군사문화의 성격을 띠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2.1 군대문화와 군사문화

우리는 군대문화와 군사문화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구분없이 혼용하기도 하나 여기에는 범주/기능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군대문화라 함은 '국가적 목적을 위해 특수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 계급과 직책 및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위계적 질서를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문화'라는 측면에서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대문화는 하나의 특수한 사회체제안에서 군대 구성원의 생활양식을 통해 형성되는 문화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장병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사고방식, 태도 및 신념체계 등의 총체로서 장병 개개인 또는 집단의

사유작용과 행동절차를 망라하여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생활양식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국군정신전력학교, 1993).

즉 군대문화는 일반사회와 다른 독특한 생활양식을 창조하여 그 운영방식이나 구성원의 활동 또는 사고의 발전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새로 충원되는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전달활동을 행하고 있다. 군대문화는 대학생문화, 청년문화, 성인문화, 대중문화, 도시문화, 농촌문화 등 기타 특수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하위문화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에 의해 일정 연령에 달한 청년층은 누구나가 군대 구성원으로서 충원되기 때문에 성장환경, 종교, 교육수준 및 직업 등에 의해 상당히 다양한 사고체계와 가치관 및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군대문화와 다른 하위문화는 반문화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으나 서로 분리 및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간에 지속적인 영향과 교류를 통해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사문화’는 군대라는 주개념과 문화라는 종개념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체로 때로는 협의의 군대문화를 지칭하기도 하고 일반사회와 관련되어 광의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러한 군사문화는 한국사회의 전체문화에 대한 하나의 하위문화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행정문화, 정치문화, 관료문화, 교육문화 등이 일반문화의 하위개념 영역을 차지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사문화가 상위개념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특수성이 있다(김순현, 1990).

군대문화와 군사문화는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군대문화는 좀더 협의로 해석될 수 있는데 반하여 군사문화는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김정식, 1990). 또한 군대문화가 좀더 중립적인 표현이라면 군사문화는 민간사회문화와 비교해 볼때 긍정보다는 부정적 함의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홍두승, 1993).

그러므로 여기서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군대문화는 군대의 전통 및 관습 등을 포함하여 군조직 내에서 그 성원들에 의해 생성 발전되어 나온 모든 형태의 상징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사회 내의 다른 하위문화와 마찬가지로 군조직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문화로 본다면 군사문화는 보다 포괄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사문화가 일반하위문화보다 상위개념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로서 사용할 것이다. 군대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국군정신전력학교, 1993).

2.1.1. 규범이 강조되는 문화

군대집단에 있어서는 특수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계통을 엄격히 확립하고 명령체계를 준수하며 신속한 행정체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군대집단의 목표와 가치는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의 운영과 통제에 있어서는 강제적 조직의 성격을 갖는다.

복종을 강요하는 규범적 요소는 군대문화를 특징지워 주는 대표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군대집단 내에서의 여러가지 행동준칙, 관습, 전통 및 명예 등의 규범으로 형성되어 장병의 행동을 규제하고 이끌어 주는 문화적 속성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군의 제도적 규범에의 복종은 전통문화가 가지고 있는 규범을 강조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받을 때 ‘충’을 강조한다. 특히 유신체제하에서는 유교의 ‘충효’사상에 기반을 둔 전통문화를 강조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였다. 전통적 유교사상의 강요는 일반조직에서는 ‘효’사상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것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 가치규범의 회귀적 복구를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1.2. 집단적 성격의 문화

군대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 중에서 집단성은 군대의 사회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내용이다. 군대가 갖고 있는 집단성은 그 구성원들이 조직적 통합의식을 공유하며 그들 스스로를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한 집단으로 의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이러한 집단적 의식은 군대의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오랜동안의 규율과 훈련과정에서, 그리고 공동적 유대 속에서 행해지는 작업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성격은 사회문화에서 조직의 특성으로 이루어지고 가족의 규범에서는 가족주의와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된다. 한편 이것이 군대에서 남자만이 집단적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성에 육한 욕구를 보다 대담하게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 특유의 집단적 문화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2.1.3. 계급성이 뚜렷한 문화

군대는 계급서열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계급에 따른 직무의 할당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때 군대생활은 팍 짜여진 제도적인 생활이며 집단의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집단정신이 강조되면서도 각 직위와 계급구조에 따라 수직적 관계를 위주로 하는 나뉠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2.1.4. 조직목적의 절대성을 띤 문화

또한 일반적으로 군대의 집단적 이익은 국가이익과 일치된다. 따라서 군대의 집단정신은 국가에 대한 봉사와 의무 그리고 책임에 의해서 형성된다. 군대조직의 모든 활동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이라는 확고부동한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 조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강제력이 행사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군대는 사회내의 어느 조직보다도 단합적이고 내부적으로 높은 정도의 결속성을 갖게 되며 이것이 중요한 문화적 속성을 이루고 있다. 군대문화는 일반사회에서 높은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양성 보다는 목표의 원할한 달성을 위한 강제력 행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울러 군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명예, 규범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 군대문화를 집단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전제로 하여 폭력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러한 인간본질에 대한 기본가치로부터 출발하여 군대집단은 협력, 조직 및 규율을 강조하고 있다. 군대집단에서는 전통, 기지, 통일, 공동체의식 등이 높은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이기주의는 최악의 적으로 간주되어 근본적으로 군대는 집단적이며 원칙적으로 반개인주의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대문화의 일반적 특질은 장병의 가치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될수 있지만 군대조직의 집단적 성격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때 규범성, 집단성, 계급성, 절대성 등이 특히 강한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일반사회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민과 사회의 요구를 제한하도록 추진했던 것이다.

2.2. 군사문화와 가부장제의 결합

정부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인 분단의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했다. 6·25의 발발은 사회성원들 사이에 국가안위에 대한 불안을 실제 체험케 하였다. 그리고 4·19와 5·16으로 이어지는 끊이지 않은 정치적, 이념적 격변상황은 국민의 안보위기의식을 계속 자극함으로써 반공의식을 정착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위협'은 사회내의 강제적, 경제적, 상징적 자원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변형운 외, 1985).

특히 유신 이후 민족 및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교육, 문화정책은 서구식 교

육 및 가치관의 보급을 통해 개인주의, 합리주의, 경쟁주의가 보편화된 반면에 대다수 민중의 생활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하지만 삶에 대한 가치관의 추구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위로 부터의 이념적 운동이었다. 우선 기존의 세대간, 부부간의 권위관계를 기반으로 한 가족조직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이효재, 1985).

정부가 강조하는 전통문화의 전수 및 충효사상은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를 밑바탕한 것이었다. 세대간의 권위주의적 관계를 규정하는 전통적인 효 규범은 노동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을 가정내에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이를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삼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배세력은 남성의 가장역할을 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남성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였다. 이는 가장에게 가족의 생계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받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장경섭, 1992).

국가가 가부장제적 가족법 및 가족제도를 온존시키려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정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족은 전통문화 및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가부장제적 가족주의가 충효 및 전통계승정책의 중요한 사회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이용됨으로써 권위적 권력과 지배질서에 순응케 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출산 양육, 및 가사노동을 개인화, 즉 사적 영역에 국한 시킴으로써 여성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 결과 노동여성의 이중부담을 제거하려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사회적 요구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그럼으로써 점점 국가의 의무로서 인식되어가는 사회보장의 책임을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둘 수 있었으며, 아울러 그것은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가부장제적 가족의 강조는 여성을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중산층 이상의 여성은 남편의 수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거나, 저소득층 여성은 저임금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에 대해 가족주의와 충효사상을 주입, 노사협조를 강제함으로써 노동통제를 피할 수 있으며 특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들의 단체활동에 대해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유영생, 1986).

지금까지 논의된 군사문화, 그리고 유교적 전통적 가치와 자본주의 구조에 의한 가부장제는 다음과 같은 가부장적 군사문화의 특징으로 나타나 여성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군대의 규범과 전통적 유교적 가치가 결합해 가부장적 군사문화의 주요한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국가에 대해서는 충성, 가족에서는 효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사적 영역으로 한정시키면서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며 여성의 역할을 가정으로 한정시켰으며,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은 남녀성비불균형 현상을 낳게 되었고, 여성은 자녀교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둘째, 집합주의적 가치관과 유교주의적 사상이 함께 어울어져 가족주의 가치관이 내포하는 집단적 성격을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원래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성향은 개인주의적 성향보다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민족이다(KWIDI & KFAW, 1992). 개인주의적 성향보다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더 중요시되는 근원은 역시 유교적 전통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6·25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가족의 번영을 위해 여성의 노동력이 밀거름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나가고 번영시켰으며, 값싼 노동력에 기반을 둔 수출정책에서 여성의 노동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주 동인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의 삶은 사적영역으로 한정되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셋째, 군대사회에서 계급서열이 뚜렷하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일반사회에의 관료적 조직의 특성상 수직적 관계를 요구한다. 특히 남성중심의 조직체에서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성공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능력보다는 인화와 정보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관습상 이러한 관계는 직장 근무 시간이 지난 이후 흔히 술과 여자를 매개로 한 사석에서 이루어지는데 여성들은 이러한 관계에 깊이 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은 자연히 조직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혹은 남성들은 이러한 관계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여성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므로 여성은 직장에서 일을 잘 처리해도, 잘못 처리해도 욕을 먹으므로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삶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위치는 집이고 남성의 위치는 사회에 있다고 믿는 편견에 기인한다.

넷째, 군대조직과 일반사회의 관료제에서 개인의 인성을 중시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훈련을 받는 기회가 부족하여 조직의 목적이 개인의 목적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지 않다. 이러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여성들은 직업의식이 결여되었다는 편견을 갖도록 하고 조직에서 배제시키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공적영역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었으며, 설혹 공적영역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여성은 항상 주변인이 될 수 밖에 없고, 남성과 동등한 학력, 능력이 있더라도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

이밖의 남성의 생물학적인 성(Sexuality)에 대한 본능이 군대의 집단적 생활을 통한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 이것은 남성이 혼자서는 성적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남자만이 있는 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욕구가 상승작용하는 군대문화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2.3. 군대와 성의 도구화

군대의 남성적인 것, 바로 그 자체는 남성들의 수중에 독점되다시피한 무기들의 야만적 힘, 인간을 무기에 묶는 정신적 구속력, 주어진 명령과 기율의 수행과 단순한 논리의 위계질서적 지휘체계에 대해 남성들이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즉 여자는 중요한 세상일에 별볼일 없는, 이른바 한계적 존재이며 중요한 행동의 세계에 있어서 '수동적인 방관자'라는 평소의 생각을 남자들은 확인한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남자들이 적을 공격하고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다른 백성을 승복시키며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얼마간의 강간사건이 잇따라 일어난다. 전쟁에 있어서 강간은 그 전쟁 자체가 '정의롭다' 혹은 '정의롭지 않다'느니 하는, 이른바 전쟁의 정의(定義)에 의해 구속받지는 않는다(수잔 브라운 밀러, 1990).

전쟁을 치르고 난뒤에 여자들에 대한 접근은 전통적으로 전쟁의 대가 혹은 보수적 성격을 띠어왔기 때문에 매음에 대한 것을 빠뜨리고 강간을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강간과 매음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두 가지의 행위-성행위를 바라지않는 여성에 대한 강제 행위로서의 강간과 돈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권리와 쾌락에 대한 군인의 관념과 같은 궤를 걸어온 것이다. 병사가 외국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복잡한 군당국의 제재에 의하여 어려운 반면 창녀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어

왔다.

흔히 군대에 가기 전에 젊은 청년이 '동정을 버리는 것'이 '남성다운 성'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접하기 쉬운 군사문화의 일부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시대에서부터 여성을 윤락화시키는 공창제도라든가 정신대와 같은 문제와 성격을 같이 하고, 현대에 와서는 공창제도, 산업형 매춘의 확산 등 성의 상품화 현상을 이 사회에 만연시키고 있다.

3. 일제시대 (1910-1945)

1930년대 군국주의하의 일본인의 가치는 사회적 조화, 의무와 희생, 천황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의 효도, 국체의 특수성 등 전통적 관념이 철저하게 심어져 왔다. 원래 새로운 국가의 독립보존이 위태로왔을 때 국익의 각오를 굳게 하려고 정부에서 가르쳤던 이러한 관념이 쉽게 해외침략과 국내체제 개편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동원하는 데 전용되어 왔다(강동진, 1985).

이것은 전통적 유교의 가치와 군대의 집단적 성격이 결합해 가부장적 군사문화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의 주 요소는 헌법내의 초헌법적인 규정, 천황대권의 규정, 그 가운데서도 통수권의 독립이다. 초·중등교육 및 군훈련과정에서는 물론이지만 관립학교와 군관학교 등의 국강에 대한 충성이념 교육은 더욱 철저하여, 이러한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은 경직된 이념의 틀 속에서 매몰될 수 밖에 없었다(김용덕, 1991).

이들의 전통적 가치관은 천황중심의 강력한 국민통합을 주장하던 것 만큼 반서양적 반입헌민주적인 배외적 국가지상주의였다. 이러한 유교주의적 전통과 군국주의의 결합은 여성을 철저히 대상으로 보고 순종하게 만들었다.

3.1. 사적영역: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강화

일제 군국주의하의 가장과 가족은 군신의 통치관계에 유사한 권력 관계로 간주되어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정당화하였다. 즉 이에(이)는 친족적 생활공동체임과 동시에 가족 내 가장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한 조직이었다.

1871년에 공포된 호적법은 남성호주를 필두로 하여 그 친족도 가족으로 간주하고 존속, 직계, 남성을 상위로, 비속, 방계, 여성을 하위로 규정하였다. 호주는 일가의 장임과 동시에 최하위에 놓여지는 행정구획의 장인 호장과 결합하여 행정조직 즉 국가권력의 최말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가부

장적 가족질서 아래서 처는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무능력자 취급을 받았고, 재산권은 남편에게 권한을 주었다(강선미, 야마시다 영애, 1993).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돌입 등 군부 중심의 파시즘체제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족내 여성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명치이후 천황제 지배의 말단 기구로서의 기능이 강조된 가족 제도하에서, 가족은 전시체제 법인 국가총동원체제의 확립에 따라 국가의 직접적 개입에 의한 통제의 대상으로서 부각된다.

국가총동원 체제는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가족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는 국민동원, 공업동원, 농업동원, 교통동원, 재정동원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가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국민동원이다. 전력에 기반이 되는 인적자원 확보와 증강을 위해 인구증산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출생증가, 결혼장려, 모성 및 영유아, 아동의 보호 다산 가정의 보호 등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인구정책의 기초가 가족정책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가족속의 여성 역할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강선미, 야마시다 영애, 1993).

이러한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가족정책을 통한 실제적 모성역할의 강조와 함께 전시체제 하에서 후방을 수비하는 여성의 역할도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즉 혈통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관념을 이용하고 정부권력을 정당화하고, 천황과 인민과의 관계를 부모 자식간의 관계와 동일시하는 것 등이다.

신권적 절대성을 가진 천황을 정점으로 지주와 부르조아지를 흡수, 통합한 군부의 막강한 정치세력화는 한국에서 계급적으로 노동자, 농민생활의 전반적인 피폐화를 초래하고 있었다. 조선조 전통사회의 내적 붕괴와 일제침략에 따른 식민지 사회구조의 형성은 한국민족을 빈민화하였다. 따라서 급격하게 증대된 빈궁한 도시민과 농민들이 노동자계급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들 가난한 가정의 생존을 위해 어린 소녀들까지 임금 노동자로서 그들의 노동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임금 노동자로서의 여성은 공창제도의 확립으로 인하여 매춘을 하게되며, 우리 젊은 여성이 피식민지 국가의 국민으로서 식민지 군대를 상대로 하는 정신대에 끌려가는 계기가 된다.

3.2. 공적영역: 여성노동력의 착취

일제는 봉건적 농업국가인 한국을 자기 하부단위로 강제 편입시키면서 기존의 봉건적 지주 소작관계를 자본주의적 계약관계에 의한 지주 소작관계로 변

경시킴으로써 전형적인 식민착취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농민은 경작권을 상실하고 노동력 이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반노동자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극도로 빈곤하게 되었다. 이런 식민지 상황하에서 여성은 생계 유지의 책임을 전가받으면서 이중으로 착취당하였다. 그들은 생존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으로 일본산업이 요구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특히 일본의 전략공업인 제사 방직공업에는 여자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몰려있었는데 방직업은 특히 어린 여공을 가장 많이 고용하였다. 식민지하에서 극도로 빈곤에 처한 한국여성들은 일본 방직회사로 여공으로 팔려가기도 하였다(정충량, 이효재, 1973).

식민지하의 한국여공은 공장법, 노동법도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의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극한의 저임금, 민족차별에 더하여 여성에게 국한된 성적희롱과 신체적 폭행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비인간적인 기계적 삶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극도의 빈곤과 한국인의 취업기회 억제로 여공이 되려는 여성은 해마다 늘어났다(오숙희, 1988).

여성의 노동력을 보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여성을 무능력자로 간주하는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성노동의 저임금과 남녀임금차별의 근거가 됨으로 일제는 가부장제를 강화시켜 여성노동력의 착취도구로 삼았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들은 사실상 전통부계 가족제도에 얽매어 의존적인 상태에서 이중삼중으로 얽매인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피지배민족으로 당하는 여성의 노동문제는 남녀불평등의 관점에서, 성적인면에서 이들은 더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여성의 노동은 자본주의의 본원적 수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되었고 그 속에서 여성들은 가족을 떠나 식모살이를 하거나 윤락가에 팔려 매춘부가 되기도 하였다.

천황제 국가가 그 지배정책 속에 포함한 이중적 성규범은 해외팽창정책에 의한 대륙침략, 전쟁 추진 과정에서 지역적으로도 확대된다. “창부는 인민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 허가 되는 것이라면 국외에서도 허락되어도 좋다. 인민들의 이주에는 창부들의 진출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강선미, 야마시다 영애, 1993).

3.3. 성의 도구화 : 공창제도의 확대와 군위안부 송출

근대 집단적 공창지역이 이 땅위에 세워진 것은 일본인에 의해서였다. 일본인들은 한반도를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면으로 여러가지 독재정책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민족의식을 퇴색시키고 둔

화시키기 위해서 공창제도를 합법화하는 정책이었다(전우섭 1989).

노일 전쟁이 끝난후 1904년 6월 “신마찌”라는 공창허가법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공포되었다. 이러한 공창허가법을 발판으로 부산의 완월동, 인천의 선화동(일명: 옐로하우스), 군산, 대구, 청진, 신의주, 목포, 대전 등으로 공창지대는 퍼져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산의 완월동은 일본인들이 그 지역 땅전부를 사들여 윤락경영자에게 분양하여 한반도 최대 규모의 사창가를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지역 이름마저도 “미도리 마찌(녹정)”라고 지어서 이 땅의 여성들을 남성의 희락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전우섭, 1989).

조선의 식민지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중국에서의 인권 획득을 목적으로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은, 국내에서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에도 불구하고 대세로서는 군국주의적인 경향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된다. 공창제도에 대해 다소 불안감을 느끼는 군국주의는 노일전쟁 후 소위 종군위안부정책을 착상한다.

일제의 군국주의적 행위는 전쟁말기에 이르러 여자 정신대를 조직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일본의 전형적인 남성위주의 군국주의는 한반도를 완전 강탈하기 위해 이 땅의 여성들을 철저히 이용했다. ‘일본군대의 위안부’가 설립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요인으로 정리될 수 있다(임종국, 1981).

첫째, 일본에서는 여성을 극도로 경멸해서 인권의 연린 조차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둘째, 일본에서는 부녀자의 인신매매가 공공연히 자행되어 창녀촌이 각 도시마다 번창해 있었으며, 이미 해외에까지 매춘업자가 다수 진출해 있었다. 셋째, 일본의 매춘업자들도 황군(皇軍)의 사기 고무라는 구호 아래 군대의 위세를 빌어서 한반도의 처녀들을 대량으로 꼬셨다. 넷째, 일본 군대는 매춘업자들의 부녀자 유괴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그것을 은밀히 제도화 시켜나갔다.

정신대는 대략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일본이라는 침략국에 의해 그중의 대부분인 조선여성을 집단으로 유인, 혹은 강제동원하여 팔아넘긴 여성집단 매매의 표본이다. 일제시대의 정신대는 일제가 한국인에게 행한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로서 군대위안부라는 구실아래 여공모집, 식당종업원, 간호부모집 등을 내세운 소위 전형적인 인신매매수법을 통하여 가공스런 성적 침탈을 자행하였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편), 1993).

4. 제3공화국에서 유신체제(1963~1979)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을 주도해 인간존중의 제반 가치가 묵살되었던 시기이다. 여기서 여성의 삶은 사적 영역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었고 공적영역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4.1. 사적영역

초기 근대화과정에서 서구에서와 같이 자생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에 의한 변화이었던 만큼 여성의 인력이 자연스럽게 활용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개혁은 불가능하였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가족 단위가 중심되는 생존'은 개개인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며, 가족 내에서 남성의 약점과 부재를 메꾸고 보완하는 여성들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었다.

한편 사회가 학력과 지식을 요구하고 젊은이들의 경제 활동력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여전히 막혀 있어 젊은 여성에게는 능력과 경제력 있는 남성을 만나 부부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대두하고 있다. 그 중심가치는 여전히 전통적인 신분의식과 생존, 출세를 위한 가부장적 가족주의 원리, 자본주의의 변형인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다. 가족은 어머니 중심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아버지가 가정에 없다는 것이 남자의 권위까지 떨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밖에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존재로서 더욱 존귀한 존재로 부상되었으며 부계혈통중심의 남성우월주의는 가정에서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조혜정, 1988).

사회에서 소외 당하는 여성들은 가정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지만 여기서 가족주의는 가족이기주의로 극한적으로 치닫게 되어 가족의 지위재생산을 위해 자녀교육의 지나친 경쟁의 강조 및 소비위주의 행동양식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타협하는 기술을 배우지 않은 채 경쟁을 부추켜서 결과에만 치중하는 형식적 교육,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 인성교육의 마비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가족에 관한 전통적 이데올로기는 남녀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합리적 의미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생존할 수 있는 가치로 심화되어가는 현상을 보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결혼 이데올로기, 가장 이데올로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정절 이데올로기, 효 이데올로기와 같은 가족 이데올로기는 더욱 더 강화될 수 밖에 없다(문소정, 1994).

국가는 가족법 개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40년동안 가부장적 가족법 개정에서 매우 미온적이었으며 1975년에 가족법이 일부 개정되었을 때 여성계와 국회의원의 눈치 사이에서 두루뭉수리로 얼버무리고 말았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위에서 언급된 가족관련 이데올로기 중에서 가부장적 군사문화와 결합한 유교적 가치는 향락산업의 번창과 더불어 '집안의 여자'와 '거리의 여자'로 보는 이분적 사고방식은 여성을 남자의 뜻에 거슬리지 않는 철저한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적 군사문화가 남성을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벌어야 하는 '일하는 동물'로 만들었다면 여성은 철저한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소비의 주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는 60-70년대 경제성장이 최우선적인 사회목표가 되는 사회환경에서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역할을 가정 밖에서의 성공, 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의 배양, 가족부양의 책임이라는 경제제일주의로 규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은 가장의 역할은 사회적으로는 '남자다움'으로 찬양되지만 남성 개인에게는 실제로 버거운 짐이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남성의 40대 사망률이 세계 제1위라는 것도 이러한 가장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문소정, 1994).

남성의 가장역할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여성의 역할이 바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남성의 가장역할과 잘 어우러져서 우리의 가족질서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되어 왔다. '성공하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가 바로 대응관계에 있는 두 역할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모성은 사랑받는 아내에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시켜야 하는 자녀의 성공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토록 현모양처 역할론은 사회복지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부모부양, 자녀양육의 물질적, 정서적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면서 가부장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왔다.

부부간의 성관계에 있어서 남성의 성은 혼전이나 혼인 후에도 여성과는 달리 꼭 결혼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남성의 성이 억제할 수 없는 동물적 본성을 지닌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남성은 성을 억제할 필요가 없으며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부추겨진다. 남성이 군대를 가게 되어 접하게 되는 군사문화에서는 동정을 버리는 것이 남성다운 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혼인후에도 남성은 일반적으로 성관계가 자유롭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바이어와 무역상담을 하기위해 유흥업소가 번창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서구의 영향을 받은 남녀평등사상이 조금씩 우리의 가치관에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가정내 여성의 지위

상승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4.2 공적영역

경제활동 참여에 관해 볼 것 같으면 수출지향적인 산업화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대외종속의 모순도 낳았다. 그에 따라 여성의 노동참여는 놀랄만한 증가율을 보여주었으며 국가산업발전에 막대한 이바지를 하였다. 그러나 저임금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의 기회는 매우 낮았다.

지난 20년(1960-1980년)간 여성취업의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 2,022천명에서 1980년 4,638천명으로 14세이상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산업별로 살펴보면 2차 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4%에서 21.9%로 15.5%포인트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3차산업에서는 22.7%에서 39.5%로 8.8%포인트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1차 산업에서는 69.6%에서 46.5%로 23.1%포인트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이들 제조업 부문 종사자들은 주로 섬유, 의복, 가죽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는 노동집약적 분야로 임금이 제조업의 평균임금에 훨씬 미달하고 있어 결국 여성들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85).

또한 미혼여성의 노동참여형태가 매우 높은 반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율은 매우 낮아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사노동을 전담하게되어 공식부문에서 배제된 기혼여성들을 저임금, 불안정고용 노동력으로 비공식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로 취업하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들은 공식부문에 고용될 때에도 미혼여성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의 대체노동력으로 종사하는 산업예비군인 것이다(유영생, 1987).

수출위주의 정책은 분단상황 및 반공이데올로기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여성노동부문에서 노동통제의 기능을 하였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으로 나타나는데, M. McIntosch는 이를 국가가 여성의 억압을 '직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구형태: 즉 주로 남성의 임금과 여성의 가사노동에 의존하는 가구형태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앤쇼우스틱 사순, 1987).

이것은 군대조직에서 나타난 자본주의의 특성인 이윤추구의 특성이 조직목적의 절대성과 결합해 국가의 이익추구에 우선권을 두는 것에 기인하며 '가족임

금제'에 근거를 둔 국가는 미혼여성의 노동력을 공식부문에서는 임금이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이용하고, 기혼여성의 노동력은 비공식 부문에서 하청을 통해 하루노동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더욱 낮은 임금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적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철저한 배제는 행정/정치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행정부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유신체제까지 역대 행정부 여성 장관은 단지 3명이었다. 여성의 공무원직 참여 현황은 1974년도 우리나라 공무원의 총수 406,454명 중 여성 공무원은 60,441명으로 14.8%를 점유하고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극히 열세를 보이고 있다(총무처, 1974). 정치참여의 중추적 분야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직 여성은 1948년의 제헌국회 이래 10대 국회까지 연인원 38명이 참여했다. 1951년 2회부터 1978년 20회까지에 걸친 법관채용시험인 고등고시 사법과에 총 9명의 여성이 합격하였다.

여성이 공적 분야에서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그것은 우리사회가 철저하게 남성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즉 남성중심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와 정보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직장근무 시간이 지난 이후 흔히 사석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며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더욱 더 소외된다.

4.3 여성의 성의 상품화

탈유교 윤리에서 새로운 윤리가 행동기준이 되기 전에 한국인의 행동준거로 오도된 황금만능주의 즉 이기적 자기중심주의가 자리를 잡게되었다.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서 남보다 잘 살아 보겠다는 생각은 제조업 부문에의 종사보다는 서비스업계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 있어 가장 손쉬운 돈벌이 방식이다. 특히 향락산업의 발달로 인해 여성들의 서비스업계의 진출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1970년대 들어와 정부는 국고수입의 증대와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국내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채의 압박을 줄이고 무역적자폭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자원을 국내에서 발견하는데 그것이 국제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증진시켰다(박종성, 1993). 1970대 이후 일본인의 단체관광이 본격화되면서 성향락 산업은 국제관광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채택되었다. 다른 한편, 향락산업이 팽창한 배경에서 정치 사회적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다. 장기집권의 독재정치는 대중을 정치 참여에서 배제

시켜 비정치화하는데 주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위 3S, 즉 스포츠, 스크린, 섹스가 탈정치적 오락문화의 수단으로 동원되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치구조와 군사문화 지배하의 정치적, 사회적 긴장과 억압이 심한 상태에서 물질만능주의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서 오는 압박감이 가중되면서, 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술과 여자를 이용하는 가운데 향락문화가 만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관광산업에서 기생관광의 활성화는 여성을 성의 도구화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해방 후 공창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른바 산업화, 고도 성장화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야 했다. 여성을 직장에서 푸대접받게 하고, 공장안에서의 엄청난 저임금과 불이익을 강요당하게 하며, 이것은 내외국인을 상대로 외화벌이 사업에 정부가 공공연하게 묵인 내지는 조장하였다(전 우섭, 1989).

덧붙여 분단상황이라는 특수한 민족현실도 윤락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 60만 군인과 4만의 미군은 윤락의 수요자로서 최우위를 차지하며 특히 이 태원, 동두천 등 곳곳의 미군 주둔지 근처에 형성된 기지촌은 외세에 의해 억압받는 민족현실의 상징일 뿐 아니라 강대국의 남성지배 이데올로기가 약소국가의 여성을 성적으로 수탈하는 현대판 정신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현실에서 윤락여성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민족현실, 경제적 불평등, 남성지배 이데올로기가 긴밀하게 연결됨으로써 형성된다.

이것은 향락산업의 수요를 창출한 요인으로 한국 특유의 접대문화를 들 수 있다. 수출지향적 경제성장과 정경유착, 기타 음성적이고 비합법적인 거래를 위한 접대 관행 등이 접대 경제를 살찌게 하는 요소들이다. 여자의 노동력은 공장과 술집 양쪽에서 수출경제의 역군으로 이용된 것이다. 접대의 고객은 정부관료, 기업가, 군인, 정치인을 위시하여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직업인들을 모두 포함한다. 바로 이러한 접대문화로 인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퇴근 후 남성과 어울릴 수 없어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없다는 편견을 갖게 되고, 여성을 직장의 핵심부문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다.

5. 제5공화국에서 제6공화국(1980 ~ 1992)

이 시기의 정치적 배경은 한국사회의 심한 갈등과 정치적 격동의 과정 속에서 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부는 강력하고 강압적인 지배체제를 구축

하였던 시기이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여성정책에는 그 기초 및 내용에 있어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난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일어난다. 헌법에 남녀평등규정을 신설하고 가족법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그러나 향락산업의 번창은 여성을 성의 상품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극단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5.1. 사적영역

1980년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개인의 의식과 행동양식도 급속도로 바뀌어 갔다.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적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내에서도 남성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부부평등의 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핵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족이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 중심의 가족유형이 계급이나 계층, 성의 이해관계에 있어 모든 계급이나 계층, 남성과 여성, 늙은이와 젊은 사람들의 현실과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과 행동양식도 급속도로 바뀌어 갔으며 가족에 대한 전통적 이데올로기도 변하고 있다.

대중소비사회로 진입하면서 높아지는 생활수준, 소비수준을 남편의 수입만으로 충족시켜 나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생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점점 남성이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도록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자율권을 점점 더 신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의식수준의 향상, 교육수준의 향상,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력의 향상은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권위를 해체하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가장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권위중심에서 협조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족생활에서 가장 이데올로기가 규정하는 가장역할은 더 이상 적합한 규범이 되지 못하지만 개인의 의식속에는 변화된 가치관이 자리잡지 못해 때로는 갈등을 야기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든 사회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든 여성이 점점 직업을 갖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 이데올로기는 변하지 않아서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참여나 사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성에게 이 모든 역할이 지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은 여전히 집안일, 바깥일을 함께 하는 이중 노동을 감당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완전하게 수행하려고 한다(문소정, 1994).

가족관계는 전반적으로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로부터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부부관계를 보면, 가족의 정서적 유대 기능 강화와 더불어 '남편주도형'에서 '부부의논형'으로, 권위적인 지배 복종관계에서 민주적인 상호의존 관계로, 부모-자녀중심에서 부부중심의 우애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부부관계를 규정하는 가치관도 변화하여 전통적인 이중 성운리를 배격하고 평등한 성운리를 적용해야한다는 의식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허용의식도 증가하고 있고, '부부유별, 남편여비, 조강지처' 등의 전통적 규범은 서서히 약화되어가고 있다(함인희, 1993).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지위는 경제적 능력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가족에게 충실한 정도에 따라 대접을 받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부부관계에서 아버지의 가정내 부재는 권위의 측면에서 아버지를 인정해주는 과거와는 달리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버지를 소외시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위치는 추락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가족에서 가부장적 군사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여성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창구에 비친 부부의 모습을 정리한 것에 의하면 외형상으로는 적어도 평등하고 상호 협력을 원칙으로 하는 부부중심의 핵가족 형태를 유지하나, 그 내부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지배복종의 관계에 있으며 가정내 아내의 위치란 대부분 정신적 육체적으로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여전히 남성중심, 남성우위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곽배희, 1994).

한편 이 시기 가족에서 주목해봐야 할 중요한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남녀의 성비 불균형 현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에 평균 출산성비는 109.5로 이미 이상적인 출산성비라고 하는 105를 훨씬 넘어섰는데 이것이 1980년에는 103.9를 이루었으나 1988년에는 113.6을 가르키고 있는 것이다(김일현, 1990).

이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비교적 활발해지고 남녀평등사상이 정착하기 시작해 여성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은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가부장적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이어야 한다'는 군사문화의 이데올로기와 부합해 출산성비의 양극화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물질적 풍요로 인한 물질위주의 이기적 가족주의로 극한적으로 치닫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서구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과 같은 시민으로부터 나온 보편적인 원칙에 의한 성취욕구의 실현이라기 보다는 '우리 가족이 잘살아야 한다'는 이기주의적 가족주의의 성취지향과 맞물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기주의적 성향은 현실에 대한 쾌락의 추구로 이어져 소비위주의 향락산업의 급성장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를 더 이상 자연스러운 규범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회의를 갖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모험적인 시도도 감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결혼은 필수에서 선택으로, 남성의 가장권은 점차 상실해가고, 어머니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던 시대에서 자아회복을 찾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성규범은 혼전 성관계 가능성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5.2 공적부문

'89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725.9만명으로 '80년의 5,407명에 비해 1,852만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남성의 73.3%('89년 기준)에는 못 미치나, '80년 41.6%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가한 46.5%를 기록하였다.

여성취업자 추이를 보면, '89년 현재 여성취업자 수는 712.5만명으로 전체의 40.7%를 점하게 되었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에 가장 많은 351만명(전체 여성취업자의 49.3%), 광공업에 206.6만명(29.0%) 그리고 농림어업에 154.6만명(21.7%)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산업별 분포를 지난 '80년과 비교해 보면 제3차 산업과 광공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취업직종별로 볼때, 지난 9년 사이에 발생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산업별, 직종별 취업분야도 상당히 변화하였다. 우선 '89년 현재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의 분포를 보면, 생산직 직종에 187.6만명(전체 여성취업자의 2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농림수산업 직종에 153.6만명(21.6%), 판매직 직종 121.1만명(17.0%), 사무직 84.9만명(11.9%), 전문기술직 48.8만명(6.8%) 순이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군사문화의 영향이 감

소한 결과라기 보다는 노동시장, 특히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인한 여성노동력의 수요가 공급자의 욕구에 부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무직, 전문직에의 여성의 참여가 여전히 부진하며, 전문직에 진출한 여성의 경우도 의사결정직에의 참여가 매우 어렵고 직장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여전히 심하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준다.

여성의 정치참여 여전히 저조하다. 11대에서 13대 여성국회의원의 수는 23명이다. 특히 13대국회는 지역구 여성후보가 14명 출마, 전원 탈락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대부분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시로 모든 직종에서 국가공무원의 남녀채용기준의 차별이 없어지고 1989년 '공무원임용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과거여성이 10%밖에 합격되지 못하였던데 비해 1989년에는 25%가 합격함으로써 여성들의 행정부 진출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사회의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고급행정직에의 여성참여는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즉 1988년 통계에 의하면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155,193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사무관) 이상의 일반직 행정공무원 중 여성은 88명으로 0.5%에 지나지 않았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정이 한명, 경감이 3명, 경위 14명, 경사 60명, 경장 167명, 순경은 582명으로 전체 경찰수의 2.2%에 지나지 않는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여성 정치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첫째, 해방후 사회혼란기에 여성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그 이후 가부장적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은 남성우위의 정치체제 확립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고, 이에 따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여성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재정권하에서 정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수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극히 제한되었으며 선거과정의 금권, 흑색선전, 폭력 등으로 타락된 양상을 보여 여성지도자들이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출하기보다는 직능대표제인 전국구를 통한 국회진출을 선호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사회의 고위당직, 전문직, 고급행정직, 최고경영직이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어 여성후보들이 남성후보에 비해 정치적 경험, 경력 및 비정치적 경력면에서 크게 뒤떨어져 저명인사를 선호하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엘리트 중심 정치관행 때문에 공천이나 정치자금, 정보면에서 여성정치인들은 불리한 입장이다.

셋째, 가족내의 가부장적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유권자의 성역할 고정 관념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

5.3. 향락산업의 번성

권력과 자본이 매춘을 알선하고 조장하고 더 나아가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데 이바지 했다는 사실은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의 잔재로 뿌리 깊은 영향력을 지속, 1980년대까지 이어지는 고질적인 병폐로 작용한다. 정치권력이 향락산업을 비호하고, 더 나아가 공적 정치폭력 장치까지 향락산업을 묵인 방치하게 된 현실은 가부장적 군사문화적 권력의 유지, 자본가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성을 미끼로 유지시키려는 수단이었다(박종성, 1993).

권력과 자본은 서로간의 이해를 교환 증폭시키기 위해 매춘채널을 은밀하게 활용했고, 또 그러한 관행을 사회적으로 지속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수많은 사회집단과 그 구성원들 역시 성을 수단으로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60년대 까지 한국매춘의 주류를 이루었던 '창녀'는 그 명맥만 유지될 뿐, 신종인 산업형 매춘이 만연하게 되었다. '70년대의 관광매춘의 문화적 충격은 점차 '80년대에는 서비스산업 부문, 특히 유흥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종과 환경위생업종의 폭발적인 수요증가 경향으로 연결되어 소비지향적 사회분위기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70년대 말부터 노골화하기 시작한 서비스산업 붐은 그 이후 매춘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즉 신종 서비스업과 관련된 '점업매춘'이 공존하는 상황이 급증한 것이다. 가령 다방의 변태영업이나 호스티스의 영업 후 고객동행과 같은 것, 이발소, 안마소, 사우나탕, 여관, 호텔, 심야고속도로 주변 등등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지속적인 정치의 군부화 경향과 불투명한 경제 장래에 불안했던 자본가 계급이 자신들의 부를 더 자금회전이 빠르고 확실한 업종에 투자한 결과이다. 이처럼 군사문화의 절대권력의 유지,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의 정신은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여 외화를 벌어들여 했으며, 시민의 비판적 정신을 마비시키려 했던 것이며 제5공화국에 들어서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6. 결 론

지금까지 일제시대 이후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적 군사문화가 여성

의 삶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유교의 충효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가치 체계가 가족주의의 생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군대문화의 조직목적의 절대성, 계급성, 집단적 성격, 규범을 강조하는 특질과 결합하고, 또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속성인 이윤을 추구하는 논리와 결합하여 여성의 활동을 사적영역으로 한정시키고, 공적영역에의 참여를 배제하였으며, 성적 도구로 사용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요약해보면 제3공화국에서 유신체제 사이에도 여성에 대한 의식은 전통적 유교의 관념과 군대의 문화가 결합한 가부장적 군사문화 가치관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성의 희생이 강요됐으면 서도, 여성은 여전히 낮은 지위를 차지하며 반면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전쟁과 불안정한 사회변혁으로 인하여 가족주의가 이기적 가족주의로 그 성격이 다소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오인되는 또 다른 피해자이다. 또한 공적영역에서도 노동집약적 수출주도 정책으로 인하여 저임금 여성노동력으로 착취를 당하였으며 정치참여에서 있어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부진했다. 수출위주의 정책은 관광기생 정책의 도입으로 연결되며, 이것은 우리사회의 매춘을 구조화 시켰다.

제5공화국에서 제6공화국 사이의 여성의 지위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사적영역에서 남녀평등의식이 대두되고, 여성의 권위가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적영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의 진출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사무직, 전문직 부문에서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치부문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했다. 이 시기에는 성의 상품화 현상이 이 사회에 극도로 만연하여, 산업형 매춘이 급증하고 있음을 볼때 정부가 여성의 평등적 인권을 고려해서 사회참여를 장려하는 여성정책을 세웠다고 보다는 평등을 향한 여성의 열망을 간과할 수 없어 실시한 정책이다.

그러면 앞으로 청산해야 할 가부장적 군사문화는 무엇일까? 앞으로 21세기를 나아가는 사회에서 대안으로 내세울 가치는 무엇일까?

이를 사적 영역에서 본다면 첫째, 이기적 가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문화에서 규범을 중시여 기는 문화, 집단주의적 성격이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가치는 가족주의의 확대된 개념인 보편적인 공동체적 삶을 향해 결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남성도 여성도 가정과 사회와 주위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부문에서 여성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위주의 문화를 양

성평등의 시각으로 바꾸어 여성도 활발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영역은 사적인 영역으로만 한정되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함과 동시에 관료제에서 연공과 서열, 그리고 남성을 중시여기는 사고방식에서 성과 관계없이 능력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발달은 성의 상품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사회에서는 독재정권을 유지시키려는 과정에서 산업형 매춘이 극도로 번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성의 대상으로 여성이 받는 피해는 대단히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앞으로는 정권 유지의 차원에서 성을 이용하는 정책을 다시는 활용해서는 안되며 건전한 가족중심의 사회체육시설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사회의 여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동진, 1985, [일본군대사], 한길사.
 강창성, 1990, "한국군벌사", [일본/한국/군국정치], 해동문화사.
 고정환, 1993, [한국여성매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락배회, 1994, "상당소 창구를 통해 본 가정문제 진단", [위기에 선 가족-한국가족의 위기와 전망], 다산출판사.
 국군정신전력학교, 1993, [군대문화의 정립에 관한 연구].
 김순현, 1990, [군사문화], 을지서적.
 김영명, 1990, "한국의 군과 정치" [한국논단].
 김용덕, 1991, [일본군대사를 보는 눈], 지식산업사.
 독고순, 1993, "군대문화의 정립에 관한 연구", 국군정신전력학교.
 문소정, 1994,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문정창, 1965, [국군 일본 조선 점령 삼십육년사] 상, 하권, 백문당.
 박종성, 1993,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변영운 외, 1985, [본단사회와 한국사회], 서울:까치.
 변화순, 1991, "국가정책과 여성", [여성연구] 제9권 3호, 한국여성개발원.
 수잔 브라운 밀러, 1990, [성, 성폭력,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오숙희, 1988,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192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영생, 1987, "한국여성노동참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관한 일 연구-1960. 7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정충량, 이효재, 1973, "일제하 여성노동자 취업실태와 노동운동에 관한

- 연구" [이대논총] 22집, 이화여자대학교
- 조희연 편, 1980, [한국사회운동사], 도서출판 죽산.
- 조혜정, 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총무처, 1974, [공무원 통계].
- 한국여성개발원, 1985, 1991, [여성백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편, 1993, [강제로끌려간조선인
군위안부들] (1993), 한울.
- 홍두승, 1993, [한국군대의 사회학], 나남.
- E. Figs, 1978, [Patriarchial Attitudes], Virago, London.
- KWDI & KFAW, 1992, [A Comparative Study on the Family Consciousness
between Korea and Japan].
- R. Miliband, 1977, [Marxism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 S. Walby, 1990, [Theorizing Patriarchy], Basil Blackwell.

국가보안법과 적색공포

오 수 성
(전남대 심리학과교수)

1. 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보안법

법은 강제력의 행사라는 억압적 지배 형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지배라는 형태로도 작용한다. 법이 시민에게 전달하고 명령하는 체제 속에는 일정한 가치, 이념, 사회적 관계와 태도 등을 지니고 있다.

법의 억압적 지배는 조직화된 국가 기구에 의해 담보되고 실현된다. 방대한 경찰, 정보 기구에 의해 법의 준수가 감시되고, 사법부와 감옥에 의해 법의 실효성이 입증된다. 이러한 법의 준수와 실효성은 물리적 폭력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신성함이라든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법의 미화이론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법의 지배 원리이다. 이 원리는 피지배자와 똑같이 법체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을 계급적 이익과는 무관한 공평무사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이로써 법의 신성함과 존엄성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유도하고 수용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법의 억압적 지배가 이데올로기적 지배로 이어지는 고리이다(조성민, 1987).

법은 그 시대 지배 세력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법을 포장하고 있는 그럴듯함에 의해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접하게 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법체제를 접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전파하고 주입하는 가장 주된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다(박원순, 1989).

한편 법은 이데올로기의 토양 위에서 탄생하고 번성한다. 원래 법이나 이데올로기는 다같이 하나의 관념과 의식의 체계로서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여러 관계에 의하여 변화·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생성된 이데올로기는 무조건 여러 조건의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적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

라 일정 기간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발생 조건과 근거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적 합성을 상실한 이데올로기도 이미 달라진 사회 현실에 저항의 몸부림을 벌이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와 역사의 모순을 왜곡하고 진정한 사회적·경제적 관계를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사회의 본질을 가리는 고정된 선입관이 되고 허위 의식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이데올로기가 오랫동안 변화된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다. 이데올로기가 딛고 정치·경제적인 기초의 변화는 그 상부의 이데올로기를 마침내 침몰시키고 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 정치적 교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의 심리·사회적 성격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이데올로기의 생성 근거가 단순한 사회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본래적 정서, 불만 그리고 욕구등 실존적 조건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는 사회 성원들에게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과거와 현재를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반영이지만, 동시에 삶의 주체의 정신 구조의 반영이며 이때 정신 구조의 모순과 긴장의 강도에 따라 이데올로기 성격이 달라진다. 즉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정신적 긴장의 해결책이기도 하고, 정신적 불균형 상태의 처방이기도 하다. 정서적 긴장은 상징적인 적을 만들어 냈으로써 배출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데올로기는 욕구와 현실의 간격을 메워 주고, 좌절과 실의에 빠질지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준다.

국가보안법은 가장 큰 위하력을 가진 법률이다. 사형이 가능한 조문만 수십 개에 이른다. 국가우월주의의 전통적 사상과 국가보안법의 혹독한 적용은 이 법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끔 만들었다. 국가보안법은 감히 그 개폐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신성한 그 무엇이며 누구나 그 독이빨에 물리기만 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냉대와 격리를 당하는 법률이다. 국가보안법과 반공 이데올로기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공생 관계를 이루며 존재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 태생에서부터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봉사의 사명을 띠고 나와 그 동안 반공 이데올로기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쳐 왔던 것이다.

이러한 위하력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사회의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박는데 이용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가장 강력한 물리적 담보이자 가장 효율적인 확산수단이였다(박원순, 1989).

그러나 반공 이데올로기가 이완되고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국가보안법 역시 개폐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약화에도 기여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졌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싹트게 하고 번성하게 했던 토양이 척박해지기 시작했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삼아 휘둘렀던 독재의 칼이 녹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반공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맹목적인 반공과 반복·안보 의식의 꽃을 피워 내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무디어진 칼로 다수 국민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온 국민의 집단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반공 이데올로기는 자리잡고 있다.

1. 반공이데로기로서의 적색 공포

해방 공간을 통하여 좌·우대립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채로 남한에서는 한국전쟁을 겪은 후에 하나의 이념으로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받아들여지고 철저한 반공 교육의 영향으로 분단의 고착화는 더욱 굳어졌다. 전쟁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 모두에게 빨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공포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람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개념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다.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국민을 강하게 결속시키는 기능을 해준 최고의 국가 이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질서를 의문시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갈등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였다.

전후 냉전 체제의 구축과 함께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등에서도 한때 반공의 바람이 몰아쳤지만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회 성원을 강력하게 결속시키고, 반대파를 제압할 수 있는 금기로써 위세를 발휘해 온 곳은 한국밖에 없다.

한국에서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알게 모르게 우리 정신 구조에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체험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정신구조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적색 공포로 그 유형을 달리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 전후에 형성된 것으로 주장되어 왔으나 그 보다 훨씬 이전인 일제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일제는 3·1

운동과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고양되는 민족 해방운동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조선인 계급간의 대립을 부각시키는 민족 분열 정책의 일환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에는 친일 세력과 우익 개량주의들이 자신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은폐, 호도하여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공을 점령 정책의 기초로 한 미군정과 함께 반소, 반공 이데올로기를 적극 확장하였다. 그러나 친일 세력과 미군정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민족 대다수에게 이렇다 할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대다수 민중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한국전쟁을 경과한 후이다. 한국전쟁이 가져온 본질적인 결과는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남북간의 이질화 특히 남북 쌍방간의 상호 증오하는 갈등 구조를 형성시킨 것이다.

남한에서의 첨예한 갈등,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집단간의 적대감, 정신적 긴장 그리고 보복 심리 등이 결합하여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전쟁 후 한국의 반공주의는 전 근대사회에서의 터부 혹은 종교 일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종교가 개인의 정신적 긴장을 배타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주듯이 전쟁 후의 반공주의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다수의 피해 다중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공의 이념을 내면화했다기 보다는 단지 전쟁 체험의 공포 때문에 이데올로기 지배를 용인하였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 전쟁 후 한국에서의 반공주의는 고해성사를 요구하였고 그들을 의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집단 병리적인 것이었다.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군부 세력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더욱 확대 강화하였다. 남북한 대립 구조를 경제적 경쟁 관계로 전환시켜 경제 개발이라는 민중의 요구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남북 대립에 대처함으로써 정부 시책에 대한 도전은 곧 분단과 남북 대립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군부의 경직된 성향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사회 내적인 저항을 이데올로기적 저항으로 환치시켜 탄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그들은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강화 개정등을 통해 용공 분자라는 이름으로 많은 민주 인사를 탄압하였다.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정보의 독점과 반대 세력에 대한 사찰, 규제 활동을 전담하면서 수구적인 반공의 차원에서 전향적인 반공 정책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30년에 걸친 군사 정권이 자기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적색 공포는 하나의 complex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정신 구조의 모순과 긴장이 첨예하면 할수록 내적 적개심은 적색 공포로 심화되어 갔다.

오수성(1995)은 적색 공포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회생양 이론을 설정하였다. 이 이론은 어떤 집단이나 대상을 가상적인 적으로 상정하여 그들을 회생양으로 하여 나머지 사람들에게 통합성이 생기는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역대 통치자들은 북한 또는 북한 사람들을 회생양으로 상정하여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가진 남한 사람들에게 적색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반공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통합의 기제로 사용하였다. 나치즘을 통해 독일인을 동원할 때 반유대주의라는 보조적 감정을 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이다.

한국에서 정치적 변혁의 고비마다 통치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회색시키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또한 범주화할 수 없는 집단적 감정의 덩어리를 적색 공포로 유발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이지 못하게 하여 통치하기 쉽게 만들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회생양을 통해 좌절과 갈등의 돌파구를 찾고 정서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개인의 무의식에 적색 공포가 잠재되어 있어 사람들은 회생양에 대해 내적 적개심을 투사하여 정서적 균형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또는 반공 교육을 받게 되면서 하나의 공포로 작용하여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었다는 가정도 해볼 수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적색 공포의 올바른 이해 없이는 남한에 정착된 분단 체계의 심층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 적색 공포는 내면화되면서 냉전 체제가 강제한 상호 적대감의 삶의 존재 양식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어진 휴전선을 우리 스스로 거두울 때 진정한 심리·정서적 통일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

박 원 순
(변호사)

1. 서 론

유행은 패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시대와 지역을 휩쓰는 질병이 있다. 이 질병은 단순히 병리학상의 전염병에 그치지 않고 한 시대의 풍조나 생각, 나아가 이념도 포함한다. 중세 유럽과 초기 미국사에 나타나는 이른바 마녀재판은 그러한 사회적 질병의 하나였다.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2백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각지에 전파되고 창궐한 '유형성 마녀병'¹⁾은 백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선량하고 무고한 부녀자의 재판과 이들중 대다수의 목숨을 앗아갔다. 자연재해 보다 더 끔찍한 인류의 재앙이었다.

그러나 중세 서양사회를 휩쓸었던 마녀재판은 끔찍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마녀들의 존재와 그들의 혐의를 오늘날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²⁾.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마녀에 대한 현실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환상의 영역일 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당시의 유럽인들은 이 마녀들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악행과 위험성에 대하여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지에 따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현상만은 아니었다. 그 무지와 비이성을 자극하고 조장하며 활용한 집권자들의 추악한 음모와 악의가 자리하고 있었다. 고문자들과 이를 활용한 권력자들의 음모야말로 죄없는 백만 마녀들에게 죽음을 선사한 것이다.

1) 不破武夫, 魔女裁判, 巖松堂書店, 東京, p. 15

2) 오늘날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지 않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에게 확고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Geoffrey Scarre, Witchcraft and Magic in 16th and 17th Century Europe,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Atlantic Highlands, NJ, 1987, p. 1) 이 말은 결국 중세 유럽인들이 마녀의 존재를 믿은 것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신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유럽사회를 휩쓸었던 마녀현상이 다른 형태로 재연되어 왔다. '빨갱이'라는 말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 처벌과 고통을 맛보게 하는 구조였다. 마녀라는 말한마디로 극한적인 고문과 화형의 고통에 직면해야 했던 많은 유럽인들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빨갱이'라는 레텔로 국가보안법의 형틀을 맞이해야 했던 비극적 한국인들이 우리 현대사속에 수없이 발견된다. 중세 서양인들이 마녀의 실재를 믿고 이들을 화형에 의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공동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듯이 이 땅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빨갱이'의 존재와 이들의 사회에 대한 위험성을 믿고 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단되는 것을 지지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신념과 태도 때문에 수많은 동시대인이 '빨갱이'로 몰려 '마녀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

우리 현대사에 나타난 국가보안법현상을 이해하는데 마녀재판의 이해와 분석은 큰 도움이 된다. 도그마가 된 한 이데올로기를 위해 많은 인간이 희생된 사례로써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 보편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이 땅에서 소란을 거듭하며 진행되어온 국가보안법재판은 서양의 마녀재판과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유사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는 국가보안법, 나아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도그마가 이 땅에 뿌려온 분열과 적대, 고난과 희생의 과정과 본질, 그 상처의 치유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세계사 속의 마녀재판

(1)개 관

마녀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 마녀는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의 기록속에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거의 모든 시기에,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녀에 대한 공포와 신념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종족이 마녀에 관한 전설과 설화를 견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이들은 마녀를 처벌하는 법령을 가지고 있었다³⁾.

3) John M. Taylor, The Witchcraft Delusion in Colonial Connecticut 1647-1697, Corner House Publishers, Williamstown, 1984, p.1

그러나 마녀신앙이 대규모의 마녀재판과 처형으로 이어진 것은 바로 중세유럽에 이르러서였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세 유럽의 마녀재판으로 희생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히소벨'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독일에서만 수십만명의 처녀들이 마녀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한다. '조르단 헤소베'는 전 유럽에서 희생된 사람은 백만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다른 학자는 15세기와 17세기 사이에 마녀라는 죄목으로 화형당한 사람이 5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⁴⁾.

유럽의 마녀재판은 영국의 미국 식민지에서도 재연되었다. 신천지를 찾아 나섰던 이들에게조차 그 끔찍한 마녀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녀'라는 이름으로 재판받지는 않았지만 여러 시대와 여러 사회를 통하여 마녀재판과 같이 한 시대에 한 사회를 광기로 몰아넣은 사례가 적지는 않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지라도 인간의 이성이 마비되고 그대신 광란의 기세가 휘몰아칠 때는 마녀재판이 보여준 사회심리적 현상, 수사와 재판의 절차, 그 결과로서의 개인의 희생들이 함께 뒤따랐다. 세계의 마녀재판사는 바로 인간의 이성과 우상의 쟁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2)중세유럽의 마녀재판

가. 마녀재판의 시작과 전개

원래 마녀는 마녀사냥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마녀라기 보다는 주술(呪術)을 행하는 여자를 말하는 정도였다. 이들은 "신비적 직관 에다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거나 여성의 다산을 돕는다거나 또는 반대로 낙태를 시키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요구에 응하여 존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술사들이 마녀로 낙인 찍히고 이단으로 폄박받기 시작한 것은 14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이때부터 마녀를 판별하는 지표와 기준이 생겨나고 이들을 집단적인 섹트로서 추적하기 시작하였다⁵⁾.

14세기를 대표하는 이단심문관 '베르나르 키'는 부부의 불화를 초래하고,

4) 마빈 해리스, 위의 책, p.171

5) 池上俊一, 魔女と聖女, 株式會社 講談社, 東京, 1991, p.14

미래를 예언하며, 병을 고치는 자를 주의하라고 촉구하였다. 그후 교황은 마녀를 최악의 이단으로 처벌하는 것을 이단심문관에게 허가하는 한편 많은 신학자, 악마학자는 마녀에 대한 공통의 특징, 그 식별방법등을 연구하게 된다. 그 결과 14세기 말에는 일종의 마녀교로서 마녀라는 집단의 존재가 자명하게 된다⁶⁾.

그러나 15세기까지 마녀의 소추는 극히 경미하였다. 그러나 1500년경을 경계로 하여 전유럽에 전염병과 같이 마녀의 체포와 재판, 소추가 퍼졌다. 처참을 극한 마녀재판이 유럽을 휩쓸었다. 1484년에는 교황 이노센트 8세의 교서와 1487년에는 '마녀소추지침' (Malleus Maleficarum)이 간행되었다. 전자에는 교황이 아직 다수의 마녀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그 3년 후에 쾰른대학의 신학교사이자 이단재판관의 저작으로 간행된 '마녀소추지침'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마녀가 되는 학설을 망라하고, 마법의 역사를 서술하며 다시 마녀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나아가 마녀가 실재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연구한 세권의 서적이다. 이 책은 1869년도에 이미 29판이 출판될 정도로 베스트 셀러였다. 이 책은 점차 그림이 가미되고 나중에는 독일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였다⁷⁾.

점차 마녀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마녀의 본질을 논하는 허다한 서적이 간행되고, 저명한 법률가가 악마에게 혼을 파는 계약의 성질을 연구하며, 당시의 형법이 마법사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⁸⁾. 이로써 마녀의 실재에 대한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마녀를 적발, 추궁하는 것은 관리와 주민의 신성한 의무이기조차 하였다. 이것이 전에 없던 마녀의 박해시대가 열린 큰 배경이었다.

마녀재판이 극성에 이른 것은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말 사이였다. 기록에 나타나는 마녀처단의 경과와 사례를 몇가지 보자⁹⁾

- 1582년 바이에른 어느 백작의 한 작은 영지에서 한명의 마녀가 체포되었다. 이 마녀의 체포에 이어 연속으로 48명이 마녀로 낙인찍혀 화형당하였다.
- 1587년 도빌 지방의 약 200여 촌락에서부터 1587년부터 이후 7년간 368명의 마녀가 적

발되어 화형당하였다.

- 1590년 남독일의 소도시 네르도링겐에서 시장의 제안에 의하여 시의회는 거리를 나돌아 다니는 마녀를 철저히 일소하도록 결의하였다. 이후 3년간 32명의 마녀가 화형 또는 침수되었다.
- 1590년 소도시 에링겐에서 65명의 마녀가 처형되었고 1597년부터 1676년 까지 197명의 마녀가 화형당하였다.
- 소스크만델 備正領에서는 1639년에 2,428명, 1654년에는 102명이 처형되었다.
- 오늘날 오스트리아 영토가 된 스타이엘마르크 지방에서 1564년부터 1748년까지 1,849명이 소추되어 1,160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 나소누 지방에서는 1629년부터 이후 4년간 255인이 마녀로 소추되었고 뷔르겐 지방에서는 1633년 이후 3년간 114명이 처형되었으며 제룻부르크에서는 1679년에 97명이 화형에 처해졌다.
- 튜링겐 숲에 인접한 게오르겐탈이라고 하는 인구 4천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에서 1652년에서부터 1700년 사이에 64회의 마녀재판이 실시되었다.
- 반베르크 승정령에서는 1627년 이후 4년간 화형당한 마녀가 285명이었고 그 이후 30년에 걸쳐 이 재판소에 계류된 마녀재판은 900건을 넘었다. 이 승정령의 인구는 겨우 10만명을 넘지 않았다.
- 뷔르스부르크 승정령에서는 1623년부터 1631년간 화형당한 마녀가 900명에 달하였다. 1627년부터 이후 4년간 29회의 재판에서 화형당한 157명의 희생자를 보면 잡다한 연령과 계급, 직업의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다. 시의회 의원, 고급관리등의 부인, 시회원의 처자, 그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 그룹, 8세, 9세, 12세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후루다에 살고 있는 바루다세르 후스라는 마녀재판관은 19년간 7백명의 마녀를 화형시켰는데 자신의 일생동안 1천명을 처형하기를 소원하였다고 한다. 로트링겐에 살고 있던 니콜라스 레미라는 사람도 재직 15년간 화형시킨 마녀가 9백명에 달했다고 한다.

나. 마녀의 개념과 그 특징

일반적으로 마녀는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원망과 저주를 받는다. 마녀는 바로 자신들에게 해악을 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마녀재판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마녀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¹⁰⁾.

6) 池上俊一, 위의 책, p.15

7) 不破武夫, 위의 책, p.8

8) 不破武夫, 위의 책, p.6

9) 不破武夫, 위의 책, pp.9-12

10) Geoffrey Scarre, 위의 책, p.4 또한 이러한 해악은 주로 농민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다. 그만큼 도시거주자들의 시각으로는 덜 해악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본질적으로 농경사회였던만큼 마녀문제는 전 주민의 문제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① 동물과 사람을 죽거나 아프게 하는 일
- ② 농작물을 해치는 일
- ③ 생식적 무능을 초래하는 일
- ④ 태풍을 불러 오고 홍수와 가뭄을 초래하는 일
- ⑤ 버터, 치즈, 맥주의 제조과정에 개입하는 일

인간이나 가축에 접촉하면 병에 들게 하는 방법을 악마로부터 배운 마녀는 바람이나 곤충등에게 주문을 걸어 곡물이나 과수, 가축등에 병균을 옮기게 만든다. 마녀가 사악한 눈으로 쳐다보면 그사람은 미쳐버린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마녀는 어떤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의 죄목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되었다. 악마와 계약을 맺은 죄, 악마에게 예배한 죄, 악마의 꿈무늬에 입맞춘 죄,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 죄, 불법적인 악마 연회에 참석한 죄, 얼음같이 차디찬 성기를 지닌 악마 인규비와 성교를 한 죄, 여성 악마인 서큐비와 성교한 죄등이 바로 그것이다.

마녀를 가장 간단하게 식별하는 방법으로써 악마학자들은 '눈물의 결여'를 들었다. 즉 악마와의 계약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한다. 악마와 마녀는 '피의 계약서'를 만들면서 악마는 마녀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고 마녀는 생애를 통하여 악마에게 복종할 것을 서약한다. 즉 신통력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로 부여받은 것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방법은 보통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가능하다. 악마는 남성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육체적 교섭을 통하여 그 악마성이 여성인 마녀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었다. 악마는 보통 멋있는 신사로 변신하여 기사, 상인, 사냥꾼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 궁핍한 여성에 접근하며 이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언으로 유혹한다¹¹⁾. 마녀는 십자가를 배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로마 카톨릭의 어떠한 권위도 부정한다. 이것이야말로 마녀를 핍박하는 도덕적, 사회적 근거가 되었다.

마녀는 생래적이며 기질적인 악마성을 띄고 있다고 보았다. 마녀와 구별되는 것은 여자마법사(Sorcerers)이다. 마녀가 천성적인 것에 비하여 마법사는 마법에 의해 남을 해하는 천부적 능력은 없고 단지 필요한 기능을 배워 주문

11) 不破武夫, 위의 책, p.5

을 외운다거나 일정한 의식을 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영국 법정에서는 마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중시하였고 스코틀랜드와 다른 대륙국가들에서는 마녀가 악마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에 더욱 심리의 초점이 두어졌다. 영국법정에서는 마법사도 구체적인 해악을 끼친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적용현실에서 이같은 구별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¹²⁾. 어차피 마녀든 마법사든 고문과 조작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마법을 쓰면서도 인간에게 해악적이지 않은 마녀들이 있다는 생각을 지닌 경우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른바 '흰 마녀' (White Witches)나 마술사(Wizards) 등이 바로 그들이다¹³⁾. 이들은 돈을 받고 질병을 고치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잃어버린 재산이나 보물의 위치를 알아맞추는 등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든지 마녀로 몰릴 여지가 있었다. 먼 마을에서 자주 고객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웃 마을의 사람들은 그녀의 위력을 두려워하여 어떤 재앙이 마을에 찾아오면 그녀를 마녀로 고소하였다¹⁴⁾. 적어도 마녀재판이 성행하던 시기에는 이와같이 '흰 마녀'가 안전하게 활동할 여지는 별로 없었다.

다. 마녀에 대한 처벌과 재판

① 체포와 수사

마녀는 먼저 풍문에 의해 적발되었다. 누구 누구가 마녀라고 하는 소문이 나고 이들을 체포하고 이웃의 부합하는 진술에 기초하여 고문에 의해 마녀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 마녀로서 소추받은 자가 심문 과정에 자신이 아는 다른 마녀를 지명하는 경우 체포된다. 그 뿐아니라 마녀의 자식도 마녀로 간주되었다. 그 자식들은 때로는 고문에 의해 마녀로 조작되거나, 어떤 때는 고문도 없이 그냥 화형당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희생자들 가운데는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유아들이 발견되는 것은 대체로 그들의 모친이 마녀였기 때문이다¹⁵⁾.

12) Geoffrey Scarre, 위의 책, p.3

13) 영국에서는 이들을 cunning folk, blessing witches 등으로 불렀다고 한다(Geoffrey Scarre, 위의 책, pp.4-5). 우리나라의 귀신과 도깨비의 구별 정도라고나 할까?

14) Geoffrey Scarre, 위의 책, p.5

15) 不破武夫, 위의 책, p.16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밤중에 집에 있지 않았거나 행선지를 대지 못하는 경우 '마녀회의'에 참석한 근거가 되었다. 고문을 가하는데도 비명을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경우 마녀의 징표가 되었다¹⁶. 체포되면서 지나치게 놀라는 모습이 마녀의 징표로 여겨지는가 하면 지나치게 차분한 것도 마녀의 습성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마녀로 한번 의심을 받게 되면 마녀로 만들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셈이다.

② 규문주의 소송절차

당시에는 이태리 법학과 캐논법을 통하여 유럽 여러나라가 이른바 규문주의(細問主義) 소송절차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 소송절차에는 고문이 합법화되어 있었다. 마녀는 바로 이 고문의 소산이었으며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규문주의 소송절차의 당연한 결과였다¹⁷. 15-16세기 로마법이 유럽 전역에 전파되기 전까지는 이른바 게르만법계에 속하는 이른바 형식적 증거법주의가 증거법상의 원칙이 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요증(要證)사실의 진실 여부는 이론상 또는 경험상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방법 자체에 의해 결정되었다. 진실은 주장자 자신의 선서, 또는 이웃의 선서, 때로는 결투에 의해 제기되고 인정되었다. 피고인 자신도 마녀가 아니라는 선서, 이웃의 선서에 의해 형벌을 면할 수가 있었지만, 마녀인지 여부는 수족을 묶고 수중에 던져 보아 가라앉으면 결백한 것이 입증되곤 하였다¹⁸. 그러나 그 결백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었다.

15-16세기경 로마법이 전래되면서 이른바 논리증거주의가 채용되었다. 요증사실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험상 논리상 진실인 것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한 증거자료의 존재를 필요로 하였다. 1532년 제정되어 18세기말까지 독일 보통법이었던 카롤리나 형법의 증거원칙에 의하면 유죄의 증거로서 피고인의 자백외에 2인의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에 의하더라도 법률에 정하는 정도의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 허용되어 이것이 마녀의 양산에 별다른 통제가 될 수 없었다.

16) 국도의 공포나 긴장을 당하는 경우 눈물샘이 고갈되는 현상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여러 의학적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한다. (不破武夫, 위의 책, p.17)

17) 不破武夫, 위의 책, p.13

18) 이른바 Hexenbad라고 불리워지는 방식이었다. (不破武夫, 위의 책, p.14)

③ 고문

위와같이 고문은 거의 모든 마녀재판의 필수적인 한 요소로 등장한다. 마녀는 결국 고문의 소산이었다. 물론 희귀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어떤 소녀는 자신이 마녀임을 아버지에게 자백하고 아버지가 딸을 신고하여 마녀재판에 등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마녀들은 자신이 마녀라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럴 경우 위에서 본 마녀의 징표들을 들이밀며 마녀라는 사실을 시인할 것을 강요한다. 그 강요의 수단이 바로 고문이었던 것이다.

이 당시 행해진 고문은 그야말로 "인간의 지혜를 모두 동원하여 만든 것으로서 필설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건강한 남자조차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문이 연약한 여성에게 가해질 때 심문관이 요구하는 내용의 진술을 자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터이다.

④ 형량과 집행

기독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는 신에 대한 반역이나 모독은 그 어떠한 범죄보다 중죄였다. 신의 적인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행위란 있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마법의 유형에 따라 달리 취급하였지만 나중에는 마녀라는 것 자체만으로 火刑, 斬首, 絞首 등의 엄벌을 받았다¹⁹.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스페인 등지에서 일어난 마녀재판을 1만건 이상 분석한 로버트 무첼블래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마녀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거의 반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²⁰.

라. 마녀재판의 소멸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광란을 연출하였던 마녀재판도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의 진전과 더불어 이성적 세계관과 과학적 정신의 대두는 불가피한 시대정신이 되었고 이것은 신학에 기반한 과학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이로써 불합리를 극한 마녀재판도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마녀재판과 투쟁한 사람들이 마녀재판이 극성을 부리던 그 시대에도 없지는

19) 不破武夫, 위의 책, p.7

20) Emmanuel Le Roy Ladurie, *Jasmin's Witch*, George Braziller, New York, 1963, p.6

않았다. 아그립파 후안, 네소데스하임, 프리드리히 후안 수베등은 “인류의 문화가 오래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었다²¹⁾. 그러나 가장 용감하게 마녀의 존재를 부정하고 마녀재판의 종식에 큰 공적이 있는 학자는 대학교수였던 크리스찬 토마지우스였다. 그는 1701년 ‘마법의 죄’라는 유명한 책을 간행하였다. 그 이전의 학자들의 견해는 수용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악마의 원조자가 박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저술들도 익명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토마지우스는 합리적인 시대정신의 선두에 섰을 뿐만아니라 그 이전 학자들의 견해마저 수용하여 그 책을 간행할 수 있었다²²⁾.

18세기를 지나면서 마녀의 고문과 그에 따른 화형도 사라졌다. 독일의 경우 1749년에 뷔루소부르크에서 1건, 1751년 아인팅겐에서 1건, 1775년 켐틴에서 1건의 마녀재판이 기록되고 있고 그 7년후인 1782년 스위스의 게랄스라는 지방에서 아인나 젤티라는 마녀가 고문끝에 참수형에 처해진 것을 끝으로 마녀재판은 유럽대륙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²³⁾.

(3) 식민지 미국 뉴잉글랜드의 마녀재판

가. 개관

“우연한 여행자의 눈으로 보면 17세기 식민지(미국)에서의 삶은 좋았다. 비록 물질적으로 아직 곤궁하였지만 미국인의 노고는 셋집에 사는 영국의 도시인이나 농노에 다름없는 농민의 그것 보다는 훨씬 낫았다. 숲에서 매일 새로운 통나무집이 섰고 바다로부터 땅의 경계는 내륙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땅은 풍부하였고 비옥하였다. 구세계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다”²⁴⁾.

이 아름다운 신세계에 부푼 꿈과 자유에의 소망을 안고 빈곤과 핍박과 절망의 유럽으로부터 도착한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인디

21) 뿐만아니라 몽테뉴는 “점작만으로 생사함을 확장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라고 말하였는가 하면 영국의 Reignald Scot라는 사람은 1584년 “마술로 사람을 해칠수 있다고 믿는 것은 단지 자기 기만”이라고 썼다. 이와같이 16세기에도 마녀재판에 대한 회의론을 지닌 개별적 지식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이다. (Geoffrey Scarre, 위의 책, p. 2)

22) 不破武夫, 위의 책, p. 22

23) 不破武夫, 위의 책, p. 23

24) Sally Smith Booth, The Witches of Early America, Hasting Hose Publishers, New York, 1975, p. 1

언과의 전쟁, 자연의 재해와 위력만이 이들을 괴롭힌 것은 아니었다. 자유를 찾아 나선 이들에게 자유를 속박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웃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면의 의식이 바로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 이웃을 마녀로 몰아 소동이 일고 마침내 마녀재판의 선풍이 이 신세계를 휘몰아쳤던 것이다.

광대무변의 신대륙에서의 생활은 개척자의 일상활동을 모두 미신적 환경으로 둘러쌌다. 유럽대륙에서 막 싹트기 시작한 과학적 사고는 전혀 이곳으로 파급되지 않았다. 유럽에서 세분화된 마녀, 주술사, ‘백색마녀’ 등의 구별은 신세계에서는 단지 “악의 어둠 속에서 일하기로 선택된 사람”으로 단순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마녀에 대한 형벌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가혹했지만 마녀를 처단하는데 훨씬 신중하였다. 살렘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민지의 분위기는 1백만명을 처형한 유럽의 15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히스테리에 전연되지 않았다. 인명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상하는 것은 인구밀도가 희박한 미국 땅에서 사회적 경제적 낭비로 간주되었다²⁵⁾.

미국 식민지의 초기 법률은 마녀에게 사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마녀로 사형당한 사람은 모두 3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24명이 살렘에서, 그것도 1692년 한해에 처형되었다. 1692년 이전에도 영국 이주민의 초기 정착지였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개별적으로 마녀재판을 받았던 사건들이 있었다. 1658년, 1662년, 1665년에 각각 마녀재판이 있었다. 1688년에는 보스톤의 존 굿윈이라는 아이가 몹시 아팠는데 그 집안의 하녀의 어머니 글로버가 마녀로 기소되어 처형되었다²⁶⁾. 띄엄 띄엄 있었던 이러한 마녀재판의 광기가 살렘마을에서 집중적으로 폭발되었던 것이다. 마녀재판이 성행한 뉴잉글랜드 지방은 청교도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한 곳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다. 보스톤의 가장 유명한 성직자 코튼 마더라는 마녀가 악의 사신이며 하느님의 선택된 인종, 청교도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보내진 것이라고 강연하고 다녔다. 마녀소동은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²⁷⁾.

그러나 17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서양 양안을 지배하고 있던 영어사용민족이 모두 마녀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영국에서의 마지막 처형 희생자는 1722년 옆집 돼지와 양에게 저주의 말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한 스코틀랜드 여자 도노크였다. 영어사용권역에서 마녀로 마지막 처형된 것은 1730년 버뮤

25) Sally Smith Booth, 위의 책, pp. 2-3

26) Katherine W. Richardson, The Salem Witchcraft Trials, Essex Institute, Salem, 1970, p. 5

27) Sally Smith Booth, 위의 책, p. 5

다의 흑인노예 사라 바세트였다. 1736년에는 킹 제임스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영국시민에 대한 마녀 기소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식민지법은 자동적으로 이에 따른 것은 아니어서 1768년까지 로드 아일랜드는 기소된 마녀에게 교수형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18세기까지 마녀재판이 지속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영국과 미국의 경우 비교적 빨리 그 비극이 종료되었지만 미신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녀재판 시대는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갔고 초자연적 세계는 단지 호기심으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미국이 독립국으로 탄생하면서 식민지 시대의 마녀재판은 매우 단순한 시대의 거의 잊혀진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다²⁸⁾

나. 살렘 마녀재판²⁹⁾

살렘 마녀재판의 히스테리는 1692년 미국의 메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살렘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그것과 관련하여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의 기소와 재판에서 연출되었다³⁰⁾. 처음에는 몇명의 소녀들이 시시한 미신적 놀이를 즐긴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의 목사였던 사무엘 페리스의 딸 9살짜리 베틀과 그녀의 사촌 11살의 아비가일은 겨울이 되면서 주로 실내에서 서인도 출신의 노예 티투바로부터 바베도스 설화와 마녀 이야기를 들으며 재미있게 놀곤 하였다. 그런데 위 두 아이가 아프자 아버지 사무엘 페리스는 동네 의사에게 보였고 중세적 사고에 젖어있던 의사는 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자 사탄의 악령이 깃들여 있다고 진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실어증에 걸리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중얼거리는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라는 요구에 아무런 대답을 않던 이들이 나중에는 티투바와 사라 굿, 사라 오스본 세사람의 이름을 냈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상증세를 보인 아이들의

28) Sally Smith Booth, 위의 책, p. 229

29) Salem Witch Trial에 대해서는 Richard Weisman, Witchcraft, Magic, and Religion in 17th-Century Massachusetts,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Amherst, 1984, Marion L. Starkey, The Devil in Massachusetts: A Modern Enquiry into the Salem Witch Trials, John Engstrom, A Most Deadful Wizzard: The Strange Life, Death & Afterlife of George Jacobs, Sr., Spectral Press, Inc., Salem, 1992등의 저작물을 참조.

30) 살렘은 1692년 당시 겨우 1,700명의 인구를 가진 자그마한 도시였다. 살렘이 '마녀' 들은 보스톤감옥으로 보내졌고 재판관 가운데 4명은 보스톤에서 차출되었다. 보스톤에서 마녀재판이 열린 적도 있었다.

입에서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뿐만아니라 마녀소동은 이웃마을로 확산되어 안도버 마을에서만 해도 50명 이상이 기소되었다³¹⁾.

심문도중에 치안판사는 여러 종류의 증거에 의존하였다.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는 피의자들의 자백이었다. 미신적 속성, 특히 육체적 특징으로서 '마녀 흔적'이 증거가 되었다. 그 피의자의 특이한 신체적 특징이 마녀의 징표로 간주되었다. 또한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초인적 행태들, 예컨대 도저히 들기 불가능한 하중의 물건을 들어올렸다는 등의 사실이 마녀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상해, 질병, 재산상의 손실 등이 악마적 힘을 가진 마녀라고 단정할 신뢰성 있는 증거라고 보았다³²⁾. 브리제 비숍이 처음 교수형을 당한 이래 순식간에 수십명의 처형이 실시되었다. 살렘지역에서의 마녀재판은 24명의 처형과 200명 이상의 구금으로 연결되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버드 대학과 그 졸업생이 이 최대의 재판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³³⁾. 이 재판의 과정에서 마녀재판을 한 10명의 재판관 가운데 3명, 재판을 받은 마녀, 그리고 그 재판이 문제가 있다고 여론을 환기시켰던 사람, 마녀가 탈옥하는데 도운 사람이 모두 하버드 대학 출신이었다³⁴⁾. 특히 하버드 대학의 학장이었던 인크리즈 마더는 이 재판에 의문을 제기하는 저서를 내어 마녀재판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환기시켰다. 마더의 아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비슷한 논조의 책을 썼다. 1692년 9월 22일 실시된 처형을 마지막으로 살렘에서의 마녀소동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³⁵⁾.

그러나 이 마녀재판이 오판이었음을 후회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법원과 교회가 그당시 행해진 부정의에 대하여 사죄하는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고 1696년 그 재판에 관여한 12명의 배심원은 참회의 성명에 서명하였다. 그 다음해 1월 14일 마녀재판의 재판관이었던 사무엘 새월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스런 오판을 자인하고 용서를 빌었다. 마녀라고 몰고 늘어져 여러 희생자를

31) Katherine W. Richardson, 위의 책, p. 10

32) Katherine W. Richardson, 위의 책, p. 12

33) 하버드대학은 1692년 당시 목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설립된 대학이었는데 마녀문제는 법률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문제였기 때문에 하버드대학 출신자들이 이 재판에 관여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하버드대학은 그당시 미국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살렘재판은 '하버드 커넥션'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Ken Bresler, The Witch Trial Trail of Boston and the Harvard Witch Walk: The People and Places of Boston and Harvard Connected with the Salem Witch Trials, Seide Press, Newton, 1992, p. 1)

34) Harvard Gazette, October 30th, 1992

35) Katherine W. Richardson, 위의 책, p. 21

났던 사람 가운데도 악마에 씌워 그런 죄악을 저질렀노라고 참회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1711년에는 생존자들이 제기한 재심이 인용되었고 배상의 판결이 내려졌다. 살렘재판의 희생자 유족 전원에게 유족들이 요청한 배상액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었다³⁶. 살렘 마을은 새로이 부임한 목사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다시 화해와 부활의 기운을 맞았고 마침내 정상적인 마을로 되돌아 갔다³⁷.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었다³⁸. 많은 학자들은 당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이하면서 생겨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의심의 기후를 조장하였고 마침내 라이벌 집단을 마녀로 고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살렘 지역은 조선과 항해의 중심지로 등장하면서 아직도 농경지역으로 남아 있던 곳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소녀들의 감정적 격앙이 어른들에 의해 과장되었고 이 지역의 버섯이 신체적 경련과 장애를 일으켰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이 소동을 어떻게 설명하든 살렘재판은 살렘사회, 나아가 미국사에 큰 오점으로 남았다³⁹.

3.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과 마녀재판

가. 개관

"만약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녀재판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녀를 발견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당시와 마찬가지로 많은 마녀를 적발하고 화형을 처할 수 있다. 그 방법이란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확실하게, 신속하게 목적에 도달시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되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愚劣한 소산, 고문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⁴⁰.

어떤 서양학자가 한 이 말이 바로 이 땅의 현대사에서 재연되어온 것은 우

36) Sally Smith Booth, 위의 책, p. 228

37) 그린이라고 하는 이 목사는 상호간의 갈등과 과거의 불행울 씻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Paul & Stephen Nissenbaum, Salem Possessed: The Social Origins of Witchcraf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8, p. 217 이하 참조)

38) 살렘재판의 연구에 대해서는 Paul Boyer & Stephen Nissenbaum, 위의 책, 서문 참조

39) Katherine W. Richardson, 위의 책, p. 24

40)不破武夫, 위의 책, p. 13에서 어떤 서양학자가 했다는 말을 재인용

연의 일치일까? 우리 시대에 존재하였던 수많은 '빨갱이'는 기실 중세유럽의 '마녀'와 별 다를 것이 없었다. '빨갱이'라는 말 만으로도 고문이 용인되고 정당한 형사절차의 예외가 될 수 있었다. 언론도, 국민도 그러한 것쯤은 용인하였다. 이러한 방조와 방관 사이에 '빨갱이'에 대한 선동과 조작이 판을 쳤다. 억울한 희생이 잇따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사회일각에서는 과격한 좌경옹공세력이 민주화라는 가면아래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폭력과 불법과 선동으로 공산주의 세상을 세우겠다고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력좌경세력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전환기에 해이해 지기 쉬운 사회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함으로써 국기를 튼튼히 다져나갈 것입니다."⁴¹

"현정권은 이 사건 수사의 초기부터 매스컴을 동원하여 편향보도로 왜곡했다. 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했다. 그들은 나를 구타하고 매달아 물고문을 하고 온갖 모욕과 협박을 했다. ... 내가 옹공, 불순세력이요, 좌경의식을 가졌다는 말은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관제빨갱이일 뿐이다. 빨갱이라는 누명만 벗겨준다면 나는 최후진술을 하지 않을 용의도 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이 어찌 빨갱이인가? 우리나라의 정치학 사전에 '빨갱이란 반독재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애국자를 독재자가 남용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기재해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⁴²

민주주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같은 논쟁은 차라리 전쟁이라고 부를만 하였다. 이른바 '옹공조작'의 거센 바람은 지난 반세기의 현대사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빨갱이'라는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뒤바꿔야 했는지 모른다. 더러는 처형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 가족은 '빨갱이' 가족의 레텔을 부치고 살아가야 했다. 정치·사회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율성과 자존심이 존중되어야 할 문학·학문·예술의 모든 영역에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밌으로써 자유로워야 할 상상력과 창작성이 소진되었다. 국가보안법 현상은 중세의 마녀재판과 너무도 많은 점에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 주술과 공포속에 우리가 살아온 것이다.

41) 전두환 전대통령의 4.13특별담화문의 일부.

42) 문부식, "1982.8.12차 부산지법 최후진술", 불타는 미국, 김은숙, 도서출판 아가페, 1988, 마산, pp. 79-80

“빨갱이라는 말은 주술화되어 그말을 뒤집어쓴 자는 저주받은 사탄처럼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 돼 버렸다. 아직도 이 땅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그 역사적, 사회과학적 의미의 조명은 무시된 채 신화속의 악령처럼 희생제물을 찾아 도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⁴³

도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악령’에 의해 ‘희생의 제물’로 선택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유럽의 중세 하늘을 날아다녔다는 이유로 화형대의 연기로 사라져야 했던 마녀들과 이 땅의 저주받은 자로 수난을 치러야 했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나. 국가보안법과 마녀재판의 유사점

너무도 기나긴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가진 중세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 현대사속의 국가보안법 재판은 기가 막힐 정도로 유사성을 지닌다. 그것은 권력이 무력한 개인들을 희생양으로 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 유사성의 몇가지 단면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① ‘중죄’ 의식과 공정절차의 실종

국가보안법 사건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국민 공동의 적으로 처단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난 시대 지배하였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중대사안이며 중죄라는 인식은 곧바로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의 특별취급을 낳았고 그것은 곧바로 통상 사법절차의 해제와 엄벌주의를 낳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피고인보호를 위한 각종의 장치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해제되었고 적부심과 보석, 집행유예는 국가보안법 사건에는 대체로 해당이 없었다.

마녀재판은 이미 설명한대로 신의 모독과 기독교에 대한 배반, 악마와의 거래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로 취급받았다. 엄정한 증거가 필요한 로마법 전수 이후에도 법률가들은 그 예외로 마녀에 대한 고문과 이로 인한 자백증거를 허용하였다. 일반 사건에는 허용되지 않는 고문의 반복이 마녀에게 가해졌고 마녀소추를 담당하는 자들은 마녀에 대한 예외적 법률 해석에 따

라 충실하게 그 직무에 종사하였다⁴⁴. 국가보안법이든 마녀사건이든 체제자체를 부정하고 전복하는 중죄라는 생각은 바로 대량의 희생자와 극단적인 피해를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정당한 재판절차마저 유린하는 근거와 배경이 되었다.

② 고문의 상용

마녀라고 고백한 고백서는 많지만 자신이 정말 마녀라고 자인한 마녀의 사례는 역사속에서 실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⁴⁵. 그 고백서는 결국 엄청난 고문에 의해 만들어진 고문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 악마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자백을 하기 까지 이들이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았겠는가? 고문은 마녀로 심문받는 피의자 본인 뿐만아니라 그 고문의 과정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의 또다른 희생자를 불러 오게 마련이었다. 누가 자신을 마녀로 안내하였고 어떤 마녀들이 이웃에 있으며 ‘악마연회’의 참석자들을 대라는 수사관의 요구와 고문은 곧바로 수십명의 연쇄적인 마녀가 그 피의자의 입에서 올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다. 다음은 1601년 오펜부르크라는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다⁴⁶.

“방랑 여인 두 사람이 고문에 못이겨 자기들이 마녀라고 자백했다. 악마의 연회에서 본 사람을 대라는 협박에 그들은 빵제조업자의 아내 엘제 그빈너의 이름을 뱉었다. 수사관들 앞에 끌려간 엘제 그빈너는 마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 세번 째 매달려 졌을 때 견디지 못해 그녀는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다시 땅에 내려졌고 악마와 사랑을 즐겼다고 고백했다. 수사관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자백을 강요했다. ...그러는 동안 수사관들은 엘제의 딸 아가테를 잡아 왔다. 그들은 아가테를 감방에 처넣고 자신과 어머니는 마녀이고 빵값을 올리기 위해 농작물을 망쳤다는 자백을 하기까지 매질을 했다. ... 중국에 가서는 그녀는 악마애인의 두 날개를 타고 악마연회에 참석했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그 연회에서 얼굴을 본 자들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다. 엘제는 두사람, 스피이스 부인과 웨이스 부인의 이름을 말했다. 1601년 12월 21일 그녀는 화형당했다.”

44) 不破武夫, 위의 책, p. 15

45) 마빈 해리스, 위의 책, p. 172

46) 마빈 해리스, 위의 책, pp. 172-174

43) 말지 제9호, 1986년 12월 31일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p. 24

국가보안법 사건도 고문과 친한 범죄이다. 특히 간첩사건이나 조직사건은 거의 예외없이 고문 피해의 호소가 따른다. 고문은 자백을 낚고 자백은 무고한 가족과 동료의 연쇄적 구속을 가져온다. 이른바 불고지죄까지 쳐서 한 간첩사건은 수명에서 수십명의 구속을 부른다. 때로는 한 집안의 패가망신을 초래한다. 이른바 '송씨일가' 사건은 전형적인 예이다. 한 월북한 가족 때문에 충청도의 한 송씨 집안은 수십명이 구속되고 장기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절단이 나고 말았던 것이다.

③ 수사관의 협박과 법정진실

- 마가레트, 그대는 자유의지에 따라 고문으로 되어진 자백을 추인하겠는가?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받고 자백할 때, 수사관은 그녀에게 말했다. '만약 지금까지 자백한 것을 부인할 의사가 있으면 지금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더 유익하게 하겠다. 만약 당신이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다시 내 손아귀로 돌아와 이제까지 보다 더 지독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등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할 수도 있다. ...마르가레타가 법정에서 끌려갔을 때는 그녀의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손에는 포승이 묶여져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 되었다. 그녀의 옆에는 간수와 수사관이 서 있고 그 뒤에는 경비대가 무장을 하고 서 있다. 자백서가 낭독되면, 수사관은 그 자백서를 추인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를 묻는다"⁴⁷⁾

"검찰에서는 사실의 진상이 드러나 저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었기에 나를 죽이겠다고 고문하던 수사관들이 검찰에마져 따라와서 저의 진술을 감시하고 있었으나 저의 조서내용은 고문과 폭행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부인하면 보안대에서 부인하지 왜 여기 와서 부인하느냐, 조서내용대로 시인하지 않으면 다시 보안대로 돌려보내서 죽여버리도록 하겠다, 너는 재판울 앓고도 죽여버릴 수 있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도록 하겠다며 양쪽 뺨을 후려치고 발길질을 하는데 ...이같은 검사의 행위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움이었고 무서움이었으며..."⁴⁸⁾

47) 마빈 해리스, 위의 책, p.175

48) 87도 제455호 구반공법위반사건의 피고인 김양기의 상고이유서, 공판기록 p.457 (출처, 국가보안법 연구 2, p.565에서 재인용)

④ 자백과 증거

마녀사건에서 어차피 증거란 자백과 이웃의 증언뿐이다. 악마연회에 참석한 증거, 농작물을 망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마녀 피의자 본인의 자백과 그녀의 평소 언동이 수상했다는 이웃 사람들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되어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결국은 자백이 마녀로 만드는 지름길이 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도 마찬가지다. 많은 조작 간첩사건의 경우 탐지하고 수집하였다는 국가기밀이 대체로 신문에 난 것이었거나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었다. 간첩의 증거로 제시된 것은 흔한 라디오 등에 불과하였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여전히 피고인 자신의 자백이었다. 많은 경우 함께 잡혀온 상피고인들의 진술이 상호 보강증거가 되었다. 결국 고문에 의해 획득된 자백이 다른 고문에 의한 자백을 보강하는 셈이었다.

⑤ 이욕적인 기술자로서의 고문수사관

마녀 사냥꾼들은 마녀들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노력했고, 그로 인해 실제 마녀들이 존재하고, 또 어느 곳이나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위험스러운 존재들이라는 신앙을 퍼뜨리는 데 노력했다는 가정은 아주 분명한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 (마녀들의 재산몰수, 고문과 처형비용의 청구등) 보상들의 존재는 마녀사냥 기술자들이 광적으로 말은 바 일을 하였던 까닭을 밝혀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⁴⁹⁾.

"최경조 대공처장은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를 기념하는 5·16민족상 보안부문의 수상을 목표로 심사회에 제출할 자신의 업적 목록 작성을 수사과의 내근에게 명령했다. 최경조가 체포한 간첩은 60여명에 이른다는 책자가 만들어졌다. 그 안에는 나의 이름도, 서성수형, 박박씨, 허철중군도 사진이 첨부되어 들어가 있었다. 최경조의 5·16민족상 수상 축하연으로 이 해의 봄은 끝났다. ...주빈석에는 멧돼지 한마리가 구워진 채로 놓여져 있다. ...멧돼지의 모습에 나는 연민을 느꼈다. 귀가 잘리고 배가 갈라져 술안주가 되어 사나이들의 위장으로 들어가는 멧돼지의 모습이 서성수 형이었고 나였고 허철중군과 박박씨, 이종수군,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동포들의 모습과 겹쳐졌던 것이다. 우종일이 그리고 오희명이 건배를 선창했다. 위하여! 대 수사과의 더욱 큰 발전과 성과증진을 위해, 위하여."⁵⁰⁾

49) 마빈 해리스, 위의 책, p.194

50) 김병진, 보안사, 소나무, 1988, pp.201-202

마녀재판에서나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나 등장하는 것이 직업적인 고문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고문을 통하여 마녀나 빨갱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재산적 이득과 승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⁵¹⁾. 이들은 교묘한 고문과 심문의 기술을 발전시켰고 법정에서 유죄를 확보하기 위한 능란한 방법들을 고안해 냈다. 이 방면에서 하나의 '기술자'였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고문전문가의 한사람은 1578년부터 1617년까지 뉴른베르크에서 고문리로 근무한 프랑츠 슈미트라는 사람이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361명의 처형과 345명의 죄수에 대한 고문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그가 재임한 임기중 몇해동안 행한 고문의 일부일 뿐이다. 그는 퇴직할 때 시당국으로부터 연금이 지급되었고 1634년에 죽었다. 슈미트의 일기에는 새디즘이나 잔학성이 엿보이는 귀절이 전혀 없으며 매우 능률적인 일을 해낸 일개 '성실한 직공'으로 평가받는다. 이단심문관으로 명성을 날렸던 스페인의 프레이 토머스 데 트로케머더는 그의 스페인이단심문소장 재직 18년동안 10만220명을 화형에 처하고 9만 7,321명을 고문했다. 그러나 그는 예술로서의 고문을 통하여 이단심문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지만 자기희생과 곁양의 생활을 보냈다. 독일의 이단심문소장으로 임명된 슈프렌게르는 가장 유명한 고문과 조작의 전문가였다. 그가 죽은 후 몇세기동안 마술 및 자백을 시키는 방법에 관한 명저로서 유명한 '마녀의 망치'에서 "마녀의 존재를 믿느냐 아니냐를 피고에게 묻도록 하라. 믿지 않는다고 답변하면 그것은 이단의 설이라 즉각 처형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 믿는다고 대답하면 자신이 마녀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냐고 묻고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가하라"는 등의 심문기술을 적고 있다. 슈프렌게르의 추궁을 벗어난 마녀는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다⁵²⁾.

한국에서 가장 유명해진 고문전문가는 역시 이근안이다. 물론 일제시대때부터 독립운동을 고문하던 유명한 친일경찰들이 있다. 이들은 해방후 독립된 조국의 경찰, 헌병대, 특무대 등에 다시 들어와 이나라의 수사기관에 고문의

전통을 뿌리내리게 했다. 노덕술, 김창룡 등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이근안은 5공시대에 민주화운동가들을 많이 고문하다가 얼굴이 알려진 경우일 뿐이다. 그는 김근태 전 민청련의장의 사건에서 지독한 고문을 함으로써 유명해졌지만 실제 미스유니버시티대회 폭파음모사건, 남민전사건, 김성학사건, 반계동맹당사건, 전노련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고문기술자'로 등장했다. 전기고문과 허리찍기에 능했다는 "그는 항상 눈에 핏발이 서 있었으며 칠성판을 자신이 발명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으며" ⁵⁴⁾ "전기고문을 하는 도중에 부하직원 을 시켜 라디오를 가져오게 하여 직접 다이얼을 맞춰 크게 틀곤 했다" ⁵⁵⁾ 고 한다. 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성의없는 당국의 조치로 아직도 검거되지 않고 있다.

⑥이단심문소와 정보부 또는 안기부

이단심문소와 이단재판소는 교회와 교리를 수호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였다. 적법절차나 피의자권리가 이 기관에 의해 존중되거나 존중해 주기를 바랄 수 없었다. 불쌍한 마녀들은 이 기관에서 제대로 변호 한번 하지 못하고 진짜 마녀가 되어 갔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한 국가의 형법체계속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로 인식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경찰, 검찰, 안기부 등에 의해 취급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안기부의 지휘 통제 아래 있었다.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수사의 주체자인 검찰을 사실상 오히려 '상명하복' 관계에 두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이 가장 상위의 힘있는 기관이 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체제에 대한 도전세력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⑦사상의 재판

마녀재판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마녀들의 햄머'를 집필한 인스티토르와 스프레거는 "다른 사람이 꿈속에서 당신이 무슨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⁶⁾. 마녀는 단지 생각만으로 남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악한 생각'도 처벌할 근거

51) 마녀재판의 경우 고문리(拷問吏)는 로우프나 유허, 장작, 火刑柱등의 조달을 통하여 수익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업으로서 죽은 여인의 그을린 내분비선을 연금술사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다니엘 P. 마너스, 고문의 세계, 대진출판사, 1975, p.114)

52) 다니엘 P. 마너스, 위의 책, p.117

53) 다니엘 P. 마너스, 위의 책, p.90

54) 이근안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전 기자회견장 김태홍의 증언(1988년 12월 22일자 동아일보 기사)

55) 김근태씨의 증언(1988년 12월 27일 한겨레신문 기사)

56) 마빈 헤리스, 위의 책, p.193

가 되었다. 마녀들은 이웃이나 동물에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아도 마녀라는 사실 자체, 마녀로서 악마연회에 참석하고 악마와 키스한 것만으로도 처벌 받아야 했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열전 가운데는 일기에 쓴 내용이 문제되었거나⁵⁷⁾ 농담으로 한 대화⁵⁸⁾조차도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 단순히 책을 읽고 소지하는 것이 수없이 문제되었다. 몇명의 학생들이 모여 토론한 것이 '의식화'라는 이름으로 처단된 사례는 예거하기조차 힘들다. 단순한 물건 조차도 그것에 '사상성'을 주입하여 처벌하려 들었다. 이른바 북한 우표수집사건이 바로 그러하였다⁵⁹⁾. 단순한 자연현상조차도 마녀의 악의와 그에 기초한 결과로 몰아붙여 처단한 마녀재판의 광기와 다를 바 없었다. 이와 같이 행동만이 아니라 사상과 양심조차도 처단할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 내면조차도 반공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꿈속에서도, 일기 속에서도, 소설의 초고⁶⁰⁾에서도 허튼 소리는 허용되지 않았다.

⑧ 연약한 계층의 피해자

마녀재판의 피해자는 주로 어린 소녀나 중노년의 여성이었다. 77.7%가 젊은 여성이었다. 여성으로서의 마녀는 남성들이 보통 저지르는 강도, 살인이 아니라 해로운 저주를 하는 등 상징적인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⁶¹⁾. 그러나 실제 여성은 가장 연약한 계층으로서 이단심문소의 공격에 대해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 역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 출신이 많았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없었고 적용의 예외가 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언론인에서부터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지식인들이 광범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단순한 고무·찬양조항이 적용

되었고 장기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른바 막걸리 국가보안법의 경우 평범한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납북어부, 재일동포, 간첩사건의 경우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었다. 이들은 제대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조차 없었고 더우기 자신들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변론의 기회가 없었고 중형을 선고받기가 일쑤였다.

⑨ 중형의 선고

위에서 보았듯이 마녀와 국가보안법위반은 다함께 체제유지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죄로 간주되었고 중형으로 다스려졌다. 마녀들은 대체로 화형 등 극악한 형벌에 처해졌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경우에도 비교적 엄벌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사형선고 인원과 반공법사건의 사형선고 인원이 1960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전체 사형선고 인원의 17.1%, 5.6%를 각각 차지함으로써 그 비중이 절대로 높음을 알 수 있다⁶²⁾. 사형이 아니더라도 무기형,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형이 쉽게 선고되었다. 이로써 이른바 '장기수의 나라'라는 조소어린 표현이 인권운동가들 사이에 회자되었다.⁶³⁾

⑩ 이웃의 태도: 고발과 위증과 방관

마녀는 이웃의 농작물을 해치고 아이들을 유괴하고 질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웃사람들은 마녀의 처단을 바랐다. 순진한 농민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고 해악을 끼치는 마을의 평화를 깨는 마녀의 존재를 좋아할 리가 없었다. 이 어리석은 농민들은 위정자의 失政에 다름아닌 풍수해와 궁핍에 대한 책임을 결국 자신의 이웃, 자신의 처자에게 전가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위정자와 법집행자에 의해 만들어진 마녀의 존재는 이들에게 마녀에 대한 증오와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마녀의 처형에 더욱 앞장서게 만들었다.

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은 이웃 사람의 신고나 고발에 기초해 있다. 특히 막걸리 반공법, 막걸리 국가보안법 사건은 같은 자리에 있었거나 전해들은 이웃과 친구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 재판받는다든 것은 바로 패가망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수를 진 이웃사람들이 상대를 파멸시키기에는 안성맞춤의 죄목이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희생자들은 법률적 제재에 의해 공민권을 박탈당하

57) 대법원 1975년 12월 9일 선고 73도 제3392호 반공법위반 사건 참조

58) 상대방의 사상을 떠보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도 반공법상의 고무·찬양죄가 성립된다고 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 1967년 12월 26일 선고, 67도 제1460호 사건 판결 참조)

59) "피고인들이 전문적인 우표수집가이고 평소의 성향이 반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북한 괴뢰집단의 우표판매와 보급활동에 동조하여 그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행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8년 12월 13일 선고, 78도 제2243호 반공법위반사건 판결문)

60) 1987년 7월 12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백진기의 6명의 공동창작 '어머니의 길' 사건은 당시 초고상태의 시와 소설, 창작보고서등이 문제되었던 것이다. (참조, 국가보안법 연구2, p.191 참조)

61) Emmanuel Le Roy Ladurie, 위의 책, p.7

62) 사법연감을 통해본 죄명별 1심사형선고인원이다. (참조, 국가보안법연구2, p.577)

63)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징역 7년이상 선고된 사람들을 장기수로 분류하는 것이 관행이다.

고 평생 기관의 감시를 받게 될 뿐만아니라 이웃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접촉을 차단당하였다. 한번 찍힌 낙인은 영원히 제거할 도리가 없었다⁶⁴.

마녀재판이나 국가보안법 재판은 일반 민중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 바로 자신의 담너머 이웃과 마을 주민을 서로 의심하게 함으로써 虐政에 대한 투쟁과 단결의 여지를 없애고 말았다.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보듯 이웃의 동태를 살피고 감시하고 고자질하게 함으로써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은 그 사회 내부 구성원을 분열시켰던 것이다.

다. 국가보안법현상의 정치적, 문화인류학적 의미

마녀재판에 대해 많은 역사학자들이 단순히 16-7세기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미신의 소산 또는 마녀사냥꾼이나 판사들의 잔혹성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서술해 왔다. 레키, 한센, 레이등의 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이성주의적 학자들의 견해에 단순히 동조하는 학자들은 없다. 오늘날 마녀재판에 대해서는 사회학자 또는 인류학자와 같이 다른 영역에서의 연구가 축적되고 가미됨으로써 보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또는 기소자들의 신분과 지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재판기록과 관련 문서들에 대한 분석으로 말미암아 마녀재판과 그 사회심리학적 현상에 대한 정교한 모습을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와 분석은 결코 마녀재판의 공포감을 경감시키거나 그 잔혹성을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 마녀재판의 기소자들의 광기와 악행만으로 설명하려는 인상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⁶⁵.

어느 인류학자는 마녀재판이 기도하였던 최종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추적하고 있다. 한번 마녀로 지목되면 혐의와 그에 대한 증거는 만들기에 달렸다. 위에서 본 것처럼 체포될 당시 피의자가 지나치게 냉정을 지켜도, 또는 당황해 해도 결국 마녀가 되기에는 마찬가지였다. 즉 서로 상반되는 태도와 반응이 마녀의 전형적 특성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⁶⁶. 이렇게 하여 한 두명의

64) 김수환 추기경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데서 오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당한 삼과 그 가족은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 긴급조치시대, 어린 학생이 어떠한 형벌도 좋으니 제발 용공좌경으로만 몰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 - -” (1986년 12월 8일자 김수환 추기경의 인권회복미사 강론)

65) Geoffrey Scarre, 위의 책, p.2

66) 不破武夫, 위의 책, p.24

희생자가 아니라 수천 수만 수십만의 희생자들이 생겨난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희생양이었던가?

“마녀사냥제도의 주된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영주나 교황의 희생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단지 자기들이 마녀나 악마의 희생물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신네 암소가 낙태했다지? 당신네 밭의 귀리는 잘 크지 않는다면? 당신네 포도가 시어졌다면서? 당신의 자식이 죽었다면서? 당신네 울타리를 부수고 빛에 쪼달리게 하고 당신의 농토를 탐내는 자는 바로 당신의 이웃 ...마녀로 변한 당신의 이웃이다. ...백성들이 가공의 적들을 격퇴하지는 힘찬 캠페인을 교회와 국가가 시작했다. ... 결국 마녀광이 지닌 실제적 의미는 마녀광란을 통해 중세 후기 사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교회로부터 인간의 형태를 취한 가상의 괴물들에게 전가시켰다는 데에 있다. 고통을 당하고 소외되고 영세화된 대중들은 부패한 성직자들이나 탐욕스러운 귀족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미쳐 날뛰는 악마들을 저주하게 되었다”⁶⁷.

결국 가난하고 무력한 부녀자들에 다름없었던 마녀들은 교회와 국가, 성직자와 귀족들의 정치적 무능과 부도덕에 대한 전가된 책임을 지고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대신 성직자와 귀족들은 오히려 “간파해 내기 힘든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위대한 보호자”로서 인식되었다. 더구나 마녀소동은 “빈자와 무산자들의 가동능력을 박탈하고, 서로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조장시키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이웃끼리 싸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불신을 고조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⁶⁸.

더 나아가 마녀사냥제도가 유럽에서 제3시대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운동이 들끓듯 일어나기 시작한 무렵에 이노센트 8세가 인준하였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법광란은 종교개혁의 후유증이 남아 있을 때 그 절정을 이루었다. 메시아적 사회운동과 마법광란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별로 힘들지 않은 수수께끼를 풀게 한다. 즉 마녀재판은 이러한 메시아적 사회운동의 기세를 꺾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고 발전된 것이었다. 메시아적 신앙을 가진 타보르 종파나 재세례파들은 그들의 메시아신앙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마법을

67) 마빈 해리스, 위의 책, p.195

68) 마빈 해리스, 위의 책, p.196